

# 목 차

주주총회소집공고.....	1
주주총회 소집공고.....	2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	4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	4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	4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	5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	5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	6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6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8
III. 경영참고사항 .....	9
1. 사업의 개요.....	9
가. 업계의 현황 .....	9
나. 회사의 현황 .....	11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14
□ 재무제표의 승인.....	14
□ 정관의 변경.....	94
□ 이사의 선임.....	98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99
□ 감사의 보수 한도 승인.....	99
※ 참고사항 .....	99

# 주주총회소집공고

2019년 3월 11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다우기술  
대 표 이 사 :           김 윤 덕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디지털벨리로 81 다우디지털스퀘어 6층  
                          (전 화) 070-8707-1000  
                          (홈페이지)<http://www.daou.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 무                               (성 명) 김 성 욱  
                          (전 화) 070-8707-1592

#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33기 정기)

당사는 상법 제363조 및 정관 제19조 규정에 의거하여 제33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해서는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본 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9년 3월 26일(화) 오전 10시

2. 장 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디지털벨리로 81 다우디지털스퀘어 1층 새암홀

3. 회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 영업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외부감사인 선임 보고

나. 부의안건

제 1호 의안 : 제 33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1주당 예정배당금 : 350원, 액면가의 70%)

제 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 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 사내이사 김성욱 선임의 건(신규선임)

제3-2호 : 사외이사 김용대 선임의 건(재선임)

제 4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제 5호 의안 :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당사 본점 및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며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공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행사제도(Shadow Votting)는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직접행사: 신분증

대리행사: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 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김용대 (출석률:85%)	
			참석여부	찬반여부
1	2018.01.02	합병종료 보고의 건	불참	-
2	2018.01.3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참석	찬성
3	2018.01.31	사람인에이치알 계약 체결의 건	참석	찬성
4	2018.02.09	키움증권 하드웨어 계약 체결의 건	불참	-
5	2018.02.20	내부결산 이사회	참석	찬성
6	2018.02.27	영업양도 계약 체결의 건	불참	-
7	2018.03.07	제3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참석	찬성
8	2018.03.09	3월 관계사 키움증권과의 계약 체결의 건	불참	-
9	2018.03.14	주식매매 계약 체결의 건	참석	찬성
10	2018.03.23	대표이사 중임의 건	참석	찬성
11	2018.04.11	한국산업은행 운용자금대출 차입 만기 연장 건	참석	찬성
12	2018.04.12	키움저축은행과의 계약 체결의 건	참석	찬성
13	2018.05.04	영업양수도 계약 변경의 건	참석	찬성
14	2018.05.17	(가칭)키움캐피탈에 대한 지분 출자의 건	참석	찬성
15	2018.05.18	신한은행 운용자금대출 차입 만기 연장 건	참석	찬성
16	2018.05.29	키움증권 IT아웃소싱 계약 체결의 건	참석	찬성
17	2018.05.31	주식매매 계약 체결의 건	참석	찬성
18	2018.06.15	키다리아엔티 일반담보대출 차입 관련 연대보증의 건	불참	-
19	2018.06.21	제2회 무보증사채 발행의 건	참석	찬성
20	2018.07.10	다우대련 금전대여의 건	참석	찬성
21	2018.08.01	8월 관계사와의 계약 체결의 건	참석	찬성
22	2018.09.03	유형자산(토지) 취득의 건	참석	찬성
23	2018.09.10	다우재팬 신주 인수의 건	참석	찬성
24	2018.09.28	키움이앤에스 PM용역 계약 체결의 건	참석	찬성
25	2018.10.17	키움캐피탈 유상증자 참여의 건	참석	찬성
26	2018.10.22	키움캐피탈 사채 보증의 건 케이씨제일차 유한회사 보증의 건	참석	찬성
27	2018.10.23	케이씨제일차 유한회사 보증내용 변경의 건	참석	찬성

28	2018.11.01	11월 관계사와의 계약 체결의 건	참석	찬성
29	2018.11.15	키움캐피탈 유상증자 참여의 건	참석	찬성
30	2018.11.23	키움캐피탈 제4호 사모사채 보증의 건	참석	찬성
31	2018.12.17	키움캐피탈 제5호 사모사채 보증의 건	참석	찬성
32	2018.12.27	키움캐피탈 제7,8회 사모사채 보증의 건	참석	찬성
33	2018.12.31	준법통제기준 제정 및 준법지원인 선임	참석	찬성
34	2018.12.31	관계사와의 계약 체결의 건	참석	찬성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 해당사항 없음.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1	1,800	24	24	-

※ 주총 승인 금액은 이사 전원에 대한 보수 한도임.

##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영업양도	다우데이타 (최대주주)	2018년 02월 27일 ~ 2018년 08월 14일	54	2.99
유지보수계약	키움증권 (계열회사)	2018년 01월 01일 ~ 2018년 12월 31일	296	16.27
담보제공	키다리아엔티 (계열회사)	2018년 06월 16일 ~ 2019년 06월 16일	100	5.50
대여제공	다우대련 (계열회사)	2018년 08월 30일 ~ 2020년 08월 30일	47	2.58
예금/적금	키움저축은행 (계열회사)	2018년 11월 14일 ~ 2019년 02월 14일	30	1.65
		2018년 07월 13일 ~ 2019년 07월 13일	200	10.99
		2018년 10월 15일 ~ 2019년 01월 15일	70	3.85
		2018년 08월 07일 ~ 2019년 08월 07일	100	5.50
		2018년 12월 31일 ~ 2019년 06월 30일	100	5.50
		2018년 12월 31일 ~ 2019년 12월 31일	100	5.50
	키움에스저축은행 (계열회사)	2018년 07월 13일 ~ 2019년 07월 13일	60	3.30
지급보증	키움캐피탈 (계열회사)	2018년 10월 29일 ~ 2021년 10월 28일	900	49.48
		2018년 11월 26일 ~ 2021년 11월 25일	200	10.99
		2018년 12월 18일 ~ 2021년 12월 17일	100	5.50
		2018년 12월 18일 ~ 2020년 12월 17일	100	5.50
		2018년 12월 18일 ~ 2019년 12월 17일	100	5.50

※ 상기 내용은 2018년도에 발생한 거래금액이 최근사업연도인 2017년 별도기준 매출총액의 100분

의 1이상에 해당하는 거래를 기재하였으며, 해당 비율은 2017년 K-IFRS 별도 재무제표의 매출총액에 대한 비율입니다.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 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다우데이터 (최대주주)	양도, 매출 등	2018.01.01 ~ 2018.12.31	59	3.24
키움증권 (계열회사)	매출거래 등	2018.01.01 ~ 2018.12.31	535	29.41
키움저축은행 (계열회사)	예금	2018.01.01 ~ 2019.12.31	600	32.98
키다리아엔티 (계열회사)	담보제공	2018.06.16 ~ 2019.06.16	100	5.50
키움캐피탈 (계열회사)	출자, 지급보증	2018.08.09 ~ 2021.12.17	1,420	78.06

※ 상기 내용은 2018년도에 발생한 거래상대방별 거래총액이 최근사업연도인 2017년 별도기준 매출총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거래를 기재하였으며, 해당비율은 2017년 K-IFRS 별도 재무제표의 매출총액에 대한 비율입니다.

### III. 경영참고사항

#### 1. 사업의 개요

##### 가. 업계의 현황

###### (1) 산업의 특성

IT서비스 산업은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시스템에 관한 기획에서부터 구축, 실제적인 운용·관리, 교육·훈련까지 모든 과정상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주문형 SW솔루션의 개발, 정보(컴퓨터)시스템 구축 및 통합, 개발 및 구축된 솔루션과 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 솔루션과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교육·훈련에 필요한 방법론, 기술 및 인프라, 인력 등을 제공하는 SW산업에 속합니다. SW는 HW를 제어하여 그 기능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뛰어넘어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 낼 수 있고, 제품을 고도화하고 서비스형태를 혁신시킴으로써 기존 산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핵심 요소입니다. 최근 스마트 디바이스 보급 확대와 ICBM(IoT, Cloud, Big Data, Mobile)환경 및 타산업과의 융합화가 가속화되면서 SW산업의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기업의 IT 비즈니스가 고도화되고 지속적으로 복잡해지는 가운데 SW와 HW 그리고 SW산업과 타산업 간의 경계가 점차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모든 산업의 비즈니스 모형이 디지털 기반의 서비스 형태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 (2) 산업의 성장성

IT시장분석기관 KRG는 2018년 국내 IT서비스 시장은 전년대비 3.6% 성장한 12조9천억원 규모를 형성하였고, 2019년은 3.4%성장한 약 13조3천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국내 IT서비스 시장은 2006년 이후 3~4%의 정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저성장세는 유지될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성장 기조를 벗어나기 위해 국내의 주요SW기업들은 클라우드 관련 전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AI, IoT, 빅데이터, AR/VR 등 다양한 신기술을 접목한 제품 및 서비스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3) 경기변동 특성

일반적으로 기업들의 IT 투자는 시스템의 노후화에 따라 일정한 교체주기를 가지기도 하지만 IT서비스 산업도 국내/외 경기 변동 및 공공 정책의 영향을 받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기업은 설비 투자를 집행한 후 IT투자를 집행하기 때문에 IT 서비스 산업은 경기의 후행적인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공공 시장의 경우 경기 변동에 의한 영향 보다는 정부의 IT투자 계획이나 공공기관의 대형 프로젝트 발주 여부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IT 서비스 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계절적 변동 요인에 따른 민감도가 매우 낮은 편입니다. 다만, 고객 예산의 집행 및 투자가 주로 하반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나 이런 경향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합니다.

###### (4) 경쟁요소

IT 서비스 사업은 진입 장벽이 높지 않고 고객들이 체감하는 서비스에 대한 차별화 정도가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산업 자체의 경쟁강도가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국내 시장의 경우 기술력, 수행경험, 높은 교섭력 등을 보유하고 있는 상위 IT서비스 업체가 대형 경쟁 사업의 대부분을 수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빅뱅, 클라우드, 빅데이터 시장의 등장, 다양한 산업과의 융합 등의 영향에 따라 다양한 경쟁구도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나. 회사의 현황

### (1) 영업개황

1986년 설립된 (주)다우기술은 '새로운 정보문화의 창조'를 가치로 인간과 기업에게 풍요로운 정보 사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차별화된 기술력과 솔루션으로 국내를 대표하는 IT 전문기업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설립 초기 Infrommix와 Netscape 사업을 시작으로 DBMS 대중화와 인터넷 활성화에 앞장선 다우기술은 세계 IT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IBM, VMware, Citrix, RedHat, Quantum, Riverbed 등과 제휴를 맺어 국내에 다양한 솔루션을 공급하면서 한국IT산업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는 키움증권의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꾸준히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는 등 IT서비스 전문기업으로 위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미래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함께 차별적 가치 제공이 가능한 신규 사업 발굴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2) 공시대상 사업부분의 구분

#### ① 인터넷서비스

(주)다우기술은 2008년 계열사였던 (주)유니텔네트웍스를 합병하여 인터넷 서비스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이를 통해 B2B사업뿐만 아니라 B2C사업까지 사업영역을 확장하였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문자메세지, 팩스, 메일, DM등을 대량으로 전송하는 뿌리오 서비스와, 시스템 연동을 통해 자동 발송 모듈을 제공하는 비즈뿌리오, 다양한 브랜드의 모바일쿠폰을 발송하는 도넛북, 지역광고 책자와 050가상전화번호를 통해 실시간 통계분석 등 부가기능 제공하는 텔패스와 콜믹스 서비스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 기업이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마케팅 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머스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다우기술도 커머스사업을 강화하였습니다. 온라인 거래시 구매자가 물건을 확인할 때까지 결제대금을 예치하여 사고를 방지해주는 안전거래 서비스 유니크로, SNS플랫폼에서도 손쉽게 상품판매가 가능하도록 주문/결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SNS Form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8년1월에는 사방넷서비스를 영위하는 (주)한국ASP를 흡수합병하여 커머스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사방넷서비스는 다수의 쇼핑몰에 다량의 상품을 취급하는 온라인 판매자의 상품정보, 주문정보, CS관리, 재고관리, 매출정산관리 등을 통합하여 한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쇼핑몰 통합관리 서비스입니다.

#### ② SI 및 IT Outsourcing

시스템통합(System Integration)은 사용자의 환경과 요구에 가장 적합한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기 위해서 컨설팅에서부터 시스템 설계, 개발, 통합, 구축, 관리, 교육, 유지보수를 전반적으로 수행하는 산업으로, 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경영 컨설팅, 정보시스템 컨설팅, 요구 분석, 시스템 설계, 설치, 운영, 유지보수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합니다. 다우기술은 지난 33년간 축적된 IT기술을 기반으로 시스템통합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공공분야의 전자정부구축사업 및 금융, 제조, 통신 등의 분야에서 다수의 사업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키움증권 및 금융계열사의 시스템 운영 경험과 SLA 등 차별화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시스템, 네트워크, DR, 보안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정보전략, 프로세스 컨설팅 서비스 등의 IT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근에는 태국증권사에 인터넷 증권 업무시스템을 구축해주며 동남아 시장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도 그 역량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 ③ Biz Infra

다우기술은 오랜 IT서비스 경력과 연구를 바탕으로 자체 개발한 기업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팸/바이러스 메일과 랜섬웨어, APT, 내부정보유출 등 다양한 보안 위협으로부터

터 피해를 예방하는 통합메일보안솔루션 테라스메일을 기반으로 기업내 소통과 협업을 위한 도구로 전자결재, 일정관리, 게시판, 메신저 등 모바일 오피스에 최적화된 그룹웨어 다우오피스, 자체 데이터센터를 바탕으로 제공되는 서버 호스팅, 도메인, 클라우드 등 기업에서 필요한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발업체의 시장진입으로 인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기술개발 투자를 통하여 제품차별화 및 수요자 만족도 극대화를 기본목표로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3) 시장점유율 등

#### ① 인터넷 서비스

다우기술이 영위하는 인터넷서비스 사업 중 문자메세지 발송 서비스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B2B와 개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B2C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B2B사업은 기존 사업의 확장으로 2015년말 SK네트웍스서비스(주)로부터 B2B기업메세징사업에 관한 영업권을 양수하여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면서 LGU+ 와 KT에 이어 3위사업자로 올라섰습니다. B2C사업은 당사의 뿌리오 사이트 기준으로 2018년 하반기 랭키닷컴 기준 문자/SMS서비스 웹사이트 점유율 약 39%로 12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엔팩스 서비스 역시 웹팩스 사이트 점유율 30%로 업계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1월에 흡수합병하여 새롭게 진행하고 있는 쇼핑몰통합관리 서비스 사방넷은 업계에서 국내 최다 쇼핑몰을 연동하고 최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독보적인 기술력과 영업력으로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② SI 및 IT Outsourc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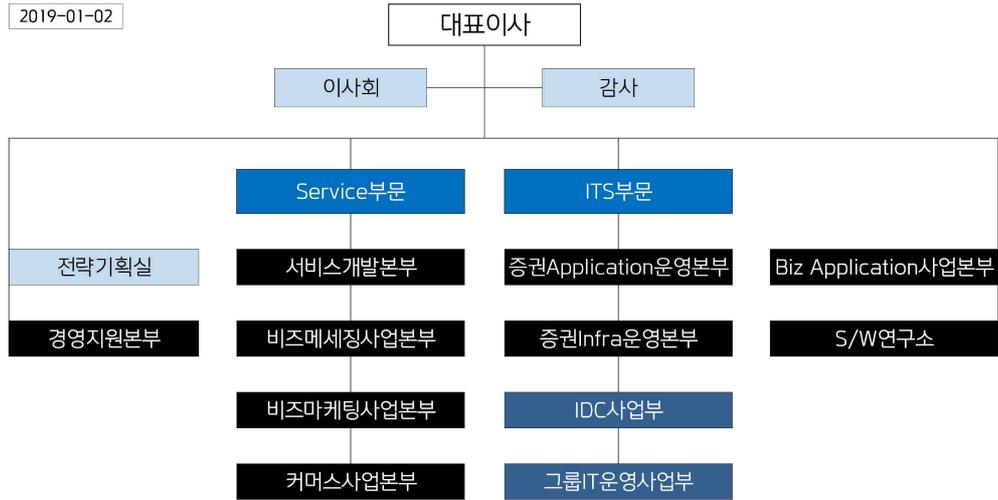
시스템통합 및 IT 아웃소싱 사업은 각 기업의 상황을 고려한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춰 다양한 규모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에 일반적인 SI기업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우기술은 30년간 쌓아온 다양한 솔루션의 전문적인 기술력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수의 공공 및 금융 SI사업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키움증권을 비롯한 다우키움그룹내에 안정적인 IT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4) 시장의 특성

국내 대형 SI업체들은 대부분 대기업의 계열사로 그룹의 전산업무를 대행 처리하는 등 안정적인 영업기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대내시장은 그룹내 영업기밀보호 및 정보보안등의 이슈로 대외시장에 비해 진입장벽이 높은편입니다. 또한 국내 IT서비스 시장은 신규 시스템 구축보다 기존 시스템 운영 효율화 및 업그레이드에 투자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5) 조직도

2019-01-02



##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 재무제표의 승인

#### 제1호 의안 : 제33기(2018년)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III. 경영참고사항의 1. 사업의 개요 참조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 자본변동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현금흐름표

※ 하기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전 재무제표로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 의견을 포함한 재무제표는 향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 연결 재무제표

####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33 기 말 2018년 12월 31일 현재

제 32 기 말 2017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다우기술과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구 분	제33(당)기말	제32(전)기말
자 산		
유동자산	15,905,914,275,444	10,915,712,580,906
현금및현금성자산	485,713,971,505	182,206,694,915
예치금	2,060,272,849,424	373,487,786,548
매출채권	9,202,869,560	20,685,262,409
계약자산	806,821,846	-
대출채권	-	3,298,893,909,781
기타유동금융자산	-	736,780,677,159
유동성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3,673,900,539,757	-
단기매매금융자산	-	3,017,128,914,008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자산	-	3,182,401,947,327
당기손익인식-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9,530,541,234,065	-
파생상품금융자산	51,619,151,725	31,083,367,438
기타유동자산	88,004,014,336	72,598,180,101
재고자산	822,740,456	445,841,220
매각예정자산	5,030,082,770	-
비유동자산	3,015,076,905,702	1,648,330,161,305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5,684,061,199
비유동성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1,306,258,403,506	-
당기손익인식-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63,520,090,352	-
만기보유금융자산	-	7,081,372,990
매도가능금융자산	-	770,984,978,343
기타포괄손익인식-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537,840,041,306	-
관계기업투자	443,723,526,394	254,077,663,579
투자부동산	306,161,915,645	269,982,063,169
유형자산	245,159,735,559	217,859,292,914
영업권	58,798,709,359	64,710,719,359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39,929,530,528	42,665,123,465
기타비유동자산	7,647,175,360	9,341,187,791
이연법인세자산	6,037,777,693	5,943,698,496
자 산 총 계	18,920,991,181,146	12,564,042,742,211
부 채		
유동부채	15,123,508,596,402	9,853,154,961,825
매입채무	2,511,459,941	4,869,251,545
계약부채	15,024,702,638	-
예수부채	5,254,316,615,131	5,021,249,037,446
단기차입금	5,352,167,842,331	3,090,620,383,153
기타유동금융부채	616,236,167,545	690,712,538,871
단기매매금융부채	-	128,030,475,463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부채	-	784,787,480,414
당기손익인식-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3,717,282,819,041	-
기타유동부채	49,422,467,359	73,716,723,456
당기법인세부채	76,137,978,191	52,141,682,890
파생상품부채	40,408,544,225	7,027,388,587
비유동부채	1,356,909,743,484	799,895,967,698
장기차입금	1,052,744,891,057	563,406,993,773
기타금융부채	8,479,185,717	9,052,047,807
요구불상환지분	-	-
기타비유동부채	164,896,762,404	88,074,739,080
총당부채	4,062,684,450	414,267,711
순확정급여부채	416,099,954	1,358,186,204
이연법인세부채	126,310,119,902	137,589,733,123
부 채 총 계	16,480,418,339,886	10,653,050,929,523
자 본		
자본금	22,433,308,500	22,433,308,500
자본잉여금	280,434,249,636	242,531,335,827

자기주식및기타자본	(17,563,779,870)	(18,553,652,805)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4,871,984,942	6,309,982,428
이익잉여금	889,688,770,696	804,324,148,119
지배기업소유주지분	1,199,864,533,904	1,057,045,122,069
비지배지분	1,240,708,307,356	853,946,690,619
자 본 총 계	2,440,572,841,260	1,910,991,812,688
부채와 자본총계	18,920,991,181,146	12,564,042,742,211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33(당) 기 2018년 01월 0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 32(전) 기 2017년 01월 0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다우기술과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구 분	제33(당)기	제32(전)기
매출액	2,354,640,330,998	1,372,802,824,553
매출원가	1,720,127,576,552	788,916,832,998
매출총이익	634,512,754,446	583,885,991,555
판매비와관리비	310,566,742,378	253,683,996,156
영업이익	323,946,012,068	330,201,995,399
기타수익	15,105,157,652	16,521,631,572
기타비용	10,493,216,435	8,296,818,367
금융수익	2,576,514,426	3,237,837,563
금융원가	11,018,391,160	6,132,923,859
지분법손익	4,258,403,714	8,316,085,655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영업이익	324,374,480,265	343,847,807,963
계속영업법인세비용	102,080,583,722	101,720,494,786
계속영업이익	222,293,896,543	242,127,313,177
중단영업이익	3,109,626,810	1,015,277,089
당기순이익	225,403,523,353	243,142,590,266
기타포괄손익:	4,374,512,004	45,329,578,205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해외사업장외화환산차이	(244,658,575)	(4,872,261,125)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52,996,801,023
지분법자본변동	(231,634,920)	341,985,272
현금흐름위험회피평가손익	233,009,773	(461,843,596)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해외사업환산손익(비지배지분)	(44,937,470)	(3,100,868,48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평가손익	(795,224,920)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평가손익	6,752,129,514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1,294,171,398)	425,765,120
당기총포괄이익	229,778,035,357	288,472,168,471
당기순이익의 귀속:		
지배기업소유주지분	110,367,845,650	114,579,159,787
비지배지분	115,035,677,703	128,563,430,479
총포괄이익의 귀속:		
지배기업소유주지분	108,805,862,451	133,190,097,155
비지배지분	120,972,172,906	155,282,071,316
주당이익		

기본 및 희석 주당계속영업이익	2,479	2,625
기본 및 희석 주당이익	2,551	2,648

##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 33(당) 기 2018년 01월 0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 32(전) 기 2017년 01월 0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다우기술과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기주식및 기타자본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비지배지분	합 계
2017.01.01(보고금액)	22,433,308.50	241,994,317.40	(21,620,252.75	(11,732,949.09	699,888,143.42	930,962,567.476	676,606,254.049	1,607,568,821.5
	0	5	9)	1)	1			25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	-	114,579,159.78	114,579,159.787	128,563,430.479	243,142,590.266
7								
기타포괄손익:								
해외사업장외화환산차이	-	-	-	(4,872,261.125)	-	(4,872,261.125)	(3,100,868.489)	(7,973,129.614)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	22,796,543,315	-	22,796,543,315	30,200,257,708	52,996,801,023
지분법자본변동	-	-	-	307,436,360	-	307,436,360	34,548,912	341,985,272
현금흐름위험회피평가손익	-	-	-	(188,787,031)	-	(188,787,031)	(273,056,565)	(461,843,596)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568,005,849	568,005,849	(142,240,729)	425,765,120
소 계	-	-	-	18,042,931,519	115,147,165.63	133,190,097,155	155,282,071,316	288,472,168,471
6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연차배당	-	-	-	-	(10,816,654.25	(10,816,654.250)	(10,011,017.450)	(20,827,671.700)
0)								
종속기업 자본변동 등	-	792,967,539	14,975,351	-	-	807,942,890	885,789,109	1,693,731,999
연결법위의 변동	-	(255,949,117)	542,623,542	-	105,493,312	392,167,737	28,669,703,143	29,061,870,880
주식선택권의 부여	-	-	216,040,018	-	-	216,040,018	-	216,040,018
전환사채의 발행	-	-	2,292,961,043	-	-	2,292,961,043	2,513,890,452	4,806,851,495
소 계	-	537,018,422	3,066,599,954	-	(10,711,160.93	(7,107,542.562)	22,058,365,254	14,950,822,692
8)								
2017.12.31(전기말)	22,433,308.50	242,531,335.82	(18,553,652.80	6,309,982.428	804,324,148.11	1,057,045,122.0	853,946,690.619	1,910,991,812.6
0								
7								
5)								
2018년 1월 1일(변경전)	22,433,308.50	242,531,335.82	(18,553,652.80	6,309,982.428	804,324,148.11	1,057,045,122.0	853,946,690.619	1,910,991,812.6
0								
7								
5)								
9								
회계정책 변경의 효과	-	-	-	3,994,532,127	(11,134,747.04	(7,140,214.921)	(7,396,313,136)	(14,536,528,057)
8)								
2018년 1월 1일(변경후)	22,433,308.50	242,531,335.82	(18,553,652.80	10,304,514,555	793,189,401.07	1,049,904,907.1	846,550,377,483	1,896,455,284.6
0								
7								
5)								
1								
48								
총포괄이익:								
당기순이익	-	-	-	-	110,367,845.65	110,367,845.650	115,035,677,703	225,403,523,353
0								
기타포괄손익:								
해외사업장외화환산차이	-	-	-	(244,658,575)	-	(244,658,575)	(44,937,470)	(289,596,045)
지분법자본변동	-	-	-	(725,988,586)	-	(725,988,586)	494,353,666	(231,634,920)
현금흐름위험회피평가손익	-	-	-	96,735,248	-	96,735,248	136,274,525	233,009,77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	-	(2,602,762,871)	-	(2,602,762,871)	1,807,537,951	(795,224,920)
당기순이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평가손익	-	-	-	2,803,182,510	-	2,803,182,510	3,948,947,004	6,752,129,514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888,490,925)	(888,490,925)	(405,680,473)	(1,294,171,398)

소 계	-	-	-	(673,492,274)	109,479,354,725	108,805,862,451	120,972,172,906	229,778,035,357
자본에 인식된 주주거래:								
종속기업 취득	-	851,919,500	(198,466,271)	-	-	653,453,229	2,631,046,782	3,284,500,011
종속기업 처분	-	(57,501,316)	705,094,854	-	-	647,593,538	912,288,997	1,559,882,535
연결범위의 변동 등	-	37,108,495,625	483,244,352	15,240,962,661	-	52,832,702,638	284,636,306,622	337,469,009,260
주식선택권의 부여	-	-	-	-	-	-	31,172,666	31,172,666
배당	-	-	-	-	(12,979,985,100)	(12,979,985,100)	(15,025,058,100)	(28,005,043,200)
소 계	-	37,902,913,809	989,872,935	15,240,962,661	(12,979,985,100)	41,153,764,305	273,185,756,967	314,339,521,272
2018년 12월 31일(당기말)	22,433,308,500	280,434,249,636	(17,563,779,870)	24,871,984,942	889,688,770,696	1,199,864,533,904	1,240,708,307,356	2,440,572,841,260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 33(당) 기 2018년 01월 0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 32(전) 기 2017년 01월 0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다우기술과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구 분	제33(당)기	제32(전)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당기순이익	225,403,523,353	243,142,590,266
비현금항목의 조정		
퇴직급여	6,598,831,167	5,885,683,829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49,221,026,580	45,667,354,255
무형자산손상차손	568,539,985	642,401,204
대손상각비	15,666,858,458	7,110,069,447
대손상각비환입	(1,384,108,412)	-
기타의대손상각비	1,794,266,951	934,453,278
외화환산손익	(790,794,742)	1,212,249,117
지분법손익	(4,258,403,717)	(8,316,085,655)
파생상품평가손익	2,900,511,266	9,923,048,434
단기매매평가손익	-	(22,449,239,805)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자산관련손익	-	(16,558,895,366)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46,317,970,585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처분손익	765,002,759	-
매도가능금융자산관련손익	-	3,468,850,00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관련손익	3,909,869	-
관계기업투자주식처분손익	(1,456,544,401)	(1,397,902,707)
매각예정자산처분손익	(3,876,879,535)	-
유형자산처분손익	5,730,845	(779,405,651)
유형자산폐기손실	8,003,815	2,281,462
투자부동산처분손익	(4,228,691,843)	(4,482,758,679)
무형자산처분손익	(267,090,411)	(3,029,400)
기타총당부채전입	3,144,004,620	-
기타총당부채환입	(971,776,753)	-
이자수익	(393,401,378,606)	(265,933,040,224)
이자비용	155,606,071,135	86,630,725,038
주식보상비용	31,172,666	216,040,018
배당금수익	(51,486,192,879)	(30,426,100,930)
법인세비용	102,957,657,950	102,006,854,990
소 계	(76,532,302,648)	(86,646,447,343)
운전자본의 조정		

매출채권	5,378,199,377	2,882,493,278
계약자산	(371,104,790)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2,728,202,591,692)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2,954,308,588,522	-
예치금	(1,596,355,948,751)	(119,231,444,240)
단기매매금융자산	-	(835,219,809,910)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100,696,312,923)
파생상품자산	(23,128,894,797)	(27,633,097,249)
대출채권	(611,924,260,972)	(955,940,012,196)
단기매매금융부채	-	(27,016,752,410)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54,573,748,034
파생상품부채	33,381,155,638	(3,387,293,544)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44,330,023,198	-
기타금융자산	-	(333,038,695,505)
기타자산	63,118,456,482	(49,383,181,272)
재고자산	4,729,454,119	604,201,887
사외적립자산	(9,515,128,313)	(5,570,707,542)
퇴직금의 지급	(482,965,832)	(1,427,507,138)
매입채무	(1,628,258,882)	(4,009,016,085)
계약부채	3,886,789,781	-
예수부채	89,308,881,305	857,430,358,024
기타금융부채	8,668,924,369	295,142,498,477
기타부채	(18,809,225,735)	92,417,379,840
소 계	(1,783,307,906,973)	(1,159,503,150,474)
이자의 수취	377,291,888,005	260,758,456,706
배당금의 수취	46,624,229,675	32,015,246,010
법인세의 납부	(89,696,172,355)	(62,273,966,259)
이자의 지급	(141,141,162,364)	(78,857,897,764)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1,441,357,903,307)	(851,365,168,858)
투자활동현금흐름		
장단기금융상품의 순증감	-	30,417,049,498
기타금융자산의 순증감	-	89,471,464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의 취득	(78,475,704,062)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의 처분	50,569,847,196	-
종속기업투자의 취득	(392,379,185,957)	(83,494,928,854)
종속기업투자의 처분	77,663,890,200	25,896,749,302
관계기업투자의 취득	(205,682,507,429)	(79,995,681,874)
관계기업투자의 처분	30,703,430,414	2,461,027,110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	(274,689,468,592)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	142,746,399,218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자산의 취득	-	(115,336,466,050)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자산의 처분	-	91,388,150,629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취득	(119,438,659,864)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처분	7,171,028,898	-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취득	-	(3,560,996,534)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처분	-	907,941,40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취득	(78,841,827,903)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처분	4,114,164,305	-
투자부동산의 취득	(58,628,800,892)	(299,686,737)
투자부동산의 처분	10,197,000,000	25,587,732,447
유형자산의 취득	(27,242,518,936)	(10,877,910,415)
유형자산의 처분	157,487,549	17,299,345,547
무형자산의 취득	(9,983,496,305)	(8,482,254,201)
무형자산의 처분	267,248,591	15,600,000
기타비유동자산의 증가	-	(290,657,220)
기타비유동자산의 감소	-	403,840,000
기타비유동부채의 증가	-	305,654,704
기타비유동부채의 감소	-	(14,713,750,006)
사업양도로 인한 현금유입	5,964,114,499	-
사업결합으로 인한 현금의 순증감	-	(19,169,037,321)
투자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783,864,489,696)	(273,391,876,476)
재무활동현금흐름		-
종속기업의 전환상환우선주 발행	355,111,387,987	-
차입금의 증가	51,716,511,598,033	31,210,467,522,449
차입금의 감소	(50,800,501,332,416)	(30,663,042,059,324)
콜머니의 순증감	50,000,000,000	-
환매조건부매도의 순증감	983,794,353,416	622,745,705,103
전자단기사채의 순증감	247,753,387,166	10,000,000,000
배당금의 지급	(28,004,967,060)	(21,239,308,168)
기타비유동부채의 순증감	(895,958,422)	-
비지배지분의 순증감	4,844,382,546	(2,207,012,271)
재무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2,528,612,851,250	1,156,724,847,789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	303,390,458,247	31,967,802,455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116,818,343	(5,908,629,998)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182,206,694,915	156,147,522,458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485,713,971,505	182,206,694,915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주석

제 33(당) 기 2018년 01월 0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 32(전) 기 2017년 01월 0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다우기술과 그 종속기업

## 1. 일반사항

주식회사 다우기술(이하, "지배기업")은 1986년 1월 9일에 설립되어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관련 솔루션의 개발 및 판매,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 관련 솔루션의 개발 및 판매, 인터넷 관련 서비스, 부동산 분양 및 개발, 임대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은 1997년 8월 27일에 주식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였으며, 수차의 유·무상증자, 신주인수권 행사 및 합병을 거쳐 당기말 현재 납입자본금은 22,433,309천원이며, 최대주주인 (주)다우데이터가 40.4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1.2 종속기업의 현황

### 1.2.1 당기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현황

(단위: 천원)

종속기업	소재지	결산일	부문	지분율 (단순합산)	
				당기말	전기말
키움증권(주1)	대한민국	12월31일	금융업	47.7%	47.7%
키움이앤에스(주2)	대한민국	12월31일	건물관리	49.0%	49.0%
다우홍콩	홍콩	12월31일	기타투자	100.0%	100.0%
다우재팬	일본	12월31일	IT	100.0%	100.0%
키다리에엔티	대한민국	12월31일	IT	100.0%	100.0%
키다리스타(구, 키다리스튜디오)	대한민국	12월31일	IT	100.0%	100.0%
다우(대련)과기개발유한공사	중국	12월31일	건물관리	100.0%	100.0%
나미빌딩주차장관리유한공사	중국	12월31일	건물관리	100.0%	100.0%
키움인베스트먼트	대한민국	12월31일	금융업	96.6%	96.0%
키움저축은행	대한민국	12월31일	금융업	100.0%	100.0%
키움YES저축은행	대한민국	12월31일	금융업	100.0%	100.0%
키움투자자산운용	대한민국	12월31일	금융업	100.0%	100.0%
PT Kiwoom sekuritas Indonesia	인도네시아	12월31일	금융업	99.0%	99.0%
PT Kiwoom Investment Management	인도네시아	12월31일	금융업	99.8%	99.8%
키움프라이빗에쿼티	대한민국	12월31일	금융업	60.0%	60.0%
키움캐피탈주식회사	대한민국	12월31일	금융업	100.0%	-
KIWOOM HONG KONG LIMITED	홍콩	12월31일	금융업	100.0%	-
Kiwoom Singapore Pte. Ltd	싱가폴	12월31일	금융업	100.0%	-
Kiwoom BVI One Limited	버진아일랜드	12월31일	금융업	100.0%	-
Kiwoom BVI Two Limited	버진아일랜드	12월31일	금융업	100.0%	-
Kiwoom BVI Three Limited	버진아일랜드	12월31일	금융업	100.0%	-
키움성장12호일자리창출투자조합(주1)	대한민국	12월31일	금융업	33.3%	33.3%

키움문화벤처제2호투자조합(주1)	대한민국	12월31일	금융업	22.6%	22.6%
가젤기업펀드(주1)	대한민국	12월31일	금융업	48.3%	48.3%
키움성장15호세컨더리투자조합(주1)	대한민국	12월31일	금융업	43.0%	43.0%
프렌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1호	한민국	12월31일	금융업	96.8%	-
키움뉴마진글로벌파트너쉽 사모투자합자회사	대한민국	12월31일	금융업	52.5%	-
글로벌강소기업키움엔에이전략 창업벤처전문 사모투자합자회사(주1)	대한민국	12월31일	금융업	20.0%	-
키움작은거인증권투자신탁1호	대한민국	12월31일	금융업	93.9%	89.7%
키움장기코어밸류	대한민국	12월31일	금융업	71.6%	70.6%
키움분리과세하이일드K-1	대한민국	12월31일	금융업	100.0%	100.0%
키움글로벌코어밸류C-F	대한민국	12월31일	금융업	92.9%	92.6%
키움한당청중국본토RQF II 주식증권자투자신탁제 1호	대한민국	12월31일	금융업	100.0%	100.0%
키움 글로벌 올에셋 투자신탁	대한민국	12월31일	금융업	100.0%	100.0%
키움달러표시우량채권증권자투자신탁채권	대한민국	12월31일	금융업	100.0%	100.0%
하이 보험연계증권 사모증권 투자신탁	대한민국	12월31일	금융업	68.0%	68.0%
메리츠 AI-G Return 전문투자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	대한민국	12월31일	금융업	99.7%	99.7%
메리츠 AI-Kbond전문투자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	대한민국	12월31일	금융업	99.7%	-
키움커버드콜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	대한민국	12월31일	금융업	99.1%	60.9%
키움글로벌하이일드명품셀렉션증권투자신탁	대한민국	12월31일	금융업	98.5%	-
라이노스 K바이오메자닌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대한민국	12월31일	금융업	98.4%	-
씨스퀘어 벤처투자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4호	대한민국	12월31일	금융업	67.1%	-
지브이에이 코스닥 IPO-I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대한민국	12월31일	금융업	61.7%	-
포커스K3 슈퍼리치 블루버드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대한민국	12월31일	금융업	91.7%	-
키움키워드림TDF2025 증권투자신탁제1호	대한민국	12월31일	금융업	98.0%	-
키움키워드림TDF2030 증권투자신탁제1호	대한민국	12월31일	금융업	96.0%	-
키움키워드림TDF2035 증권투자신탁제1호	대한민국	12월31일	금융업	95.9%	-
키움키워드림TDF2040 증권투자신탁제1호	대한민국	12월31일	금융업	98.2%	-
키움키워드림TDF2045 증권투자신탁제1호	대한민국	12월31일	금융업	96.2%	-
키움K고래멀티전략전문사모투자신탁제1호C-S	대한민국	12월31일	금융업	82.9%	-
키움K200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C-F	대한민국	12월31일	금융업	100.0%	-
메리츠AI-EuroBond전문투자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	대한민국	12월31일	금융업	99.6%	-
키움아세안성장에이스(주식)C-F	대한민국	12월31일	금융업	98.7%	-
키움글로벌금리와물가연동증권(H)C-F	대한민국	12월31일	금융업	67.3%	-
키움인도네시아프런티어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대한민국	12월31일	금융업	98.6%	-
키움마일스톤유럽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6-A호	대한민국	12월31일	금융업	63.6%	-
키움마일스톤유럽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6-B호	대한민국	12월31일	금융업	66.7%	-
마스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48호	대한민국	12월31일	금융업	66.7%	-
넛지제일차(주) 외 32개 유동화 SPC(주3)	대한민국	12월31일	금융업	-	-

(주1) 지분율은 50%이하이지만 지배기업 혹은 종속기업이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므로 연결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주2) 지분율이 50%미만이나 일부 개인 주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연결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주3) 유가증권 등의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구조화기업으로 피투자자 관련활동에 대한 힘, 변동이익 노출,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힘을 사용하는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배기업이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1.2.2 연결대상 투자조합

연결대상 투자조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조합	근거법령	설립일
키움성장12호일자리창출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지원법	2012년 01월 30일
키움문화벤처제2호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지원법	2016년 03월 20일
가젤기업펀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2012년 11월 28일
키움성장15호세컨더리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지원법	2016년 02월 04일
프렌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1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2016년 04월 26일
키움뉴마진글로벌파트너쉽 사모투자합자회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2017년 06월 28일
글로벌강소기업키움엠엔에이전략 창업벤처전문 사모투자합자회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2018년 05월 15일

### 1.2.3 연결대상 수익증권

연결대상 수익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익증권	근거법령	설립일
키움작은거인증권투자신탁1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1년 03월 31일
키움장기코어밸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4년 04월 18일
키움분리과세하이일드K-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4년 10월 29일
키움글로벌코어밸류C-F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5년 11월 18일
키움한당청중국본토RQF II 주식증권자투자신탁제1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6년 07월 27일
키움 글로벌 올에셋 투자신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6년 08월 07일
키움달러표시우량채권증권자투자신탁채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6년 09월 25일
하이 보험연계증권 사모증권 투자신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7년 07월 19일
메리츠 AI-G Return 전문투자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7년 11월 08일
메리츠 AI-Kbond전문투자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8년 01월 03일
키움커버드콜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7년 11월 23일
키움글로벌하이일드명품셀렉션증권투자신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8년 02월 26일
라이노스 K바이오메자닌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8년 04월 18일
씨스퀘어 벤처투자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4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8년 04월 16일
지브이에이 코스닥 IPO-I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8년 04월 20일
포커스K3 슈퍼리치 블루버드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8년 04월 24일

키움키워드림TDF2025 증권투자신탁제1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8년 06월 14일
키움키워드림TDF2030 증권투자신탁제1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8년 06월 14일
키움키워드림TDF2035 증권투자신탁제1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8년 06월 14일
키움키워드림TDF2040 증권투자신탁제1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8년 06월 14일
키움키워드림TDF2045 증권투자신탁제1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8년 06월 14일
키움K고래멀티전략전문사모투자신탁1호C-S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8년 04월 19일
키움K200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C-F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8년 05월 24일
메리츠AI-EuroBond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8년 07월 19일
키움아세안성장에이스(주식)C-F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8년 07월 16일
키움글로벌금리와왈가연동증권(H)_C-F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8년 09월 21일
키움인도네시아프런티어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8년 10월 31일
키움마일스톤유럽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6-A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8년 12월 03일
키움마일스톤유럽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6-B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8년 08월 18일
마스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48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8년 03월 02일

#### 1.2.4 연결대상 자산유동화 SPC

연결대상 구조화기업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익증권	근거법령	설립일
넛지제일차(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17년 10월 30일
케이디아이씨제일차(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17년 12월 22일
엘티더블유제일차(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18년 03월 16일
티케이파이낸스제일차(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18년 12월 28일
와이디제일차(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16년 05월 18일
원비전용산제일차(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16년 07월 29일
와이파크(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16년 08월 24일
디밸리제일차(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17년 10월 30일
와이디밸리제일차(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17년 12월 06일
그레이스 와이(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18년 04월 26일
케이더블유스카이제일차(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17년 04월 06일
케이더블유에스지제일차(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17년 05월 18일
케이에스디아이(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18년 03월 21일
케이더블유스카이제이차(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18년 03월 30일
케이더블유스카이제삼차(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18년 05월 30일
케이에스에이치씨제일차(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18년 07월 05일
케이더블유스카이제사차(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18년 11월 27일
디앤케이세종(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18년 08월 20일
디케이용인신봉(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18년 12월 28일
글로벌푸드파트너스제이차(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16년 10월 31일
멀티플렉스시리즈제일차(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18년 08월 29일

엘디케이제일차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18년 08월 27일
유에스제육차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18년 10월 12일
케이더블유에스더블유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18년 11월 05일
제이디아트제일차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18년 06월 19일
트리플세븐제일차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18년 09월 12일
에스더블유제이제일차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18년 10월 29일
지인유동화제십삼차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18년 07월 12일
지인유동화제십사차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18년 08월 28일
지인유동화제십오차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18년 10월 25일
디클러스터제삼차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18년 08월 03일
케이더블유평택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18년 10월 05일
케이더블유에스타워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18년 12월 03일

1.2.5 주요종속기업의 요약재무정보  
<당기 및 당기말>

(단위: 천원)

종속기업	자산	부채	자본	영업수익 (매출액)	당기순이익 (손실)
키움증권	15,005,738,546	13,083,118,548	1,922,619,998	1,851,506,351	190,800,960
키움이앤에스	85,704,353	33,060,354	52,643,999	15,417,370	4,049,009
다우홍콩(주1)	42,314,437	11,059,650	31,254,787	5,334,997	769,054
키다리이엔티	45,639,967	17,086,719	28,553,248	54,870,114	1,279,267
키움인베스트먼트	58,712,411	11,144,691	47,567,720	7,848,573	65,211
키움저축은행	1,139,959,060	1,019,811,245	120,147,815	82,546,461	18,510,669
키움YES저축은행	924,968,523	823,164,521	101,804,002	50,044,130	14,226,303
키움투자자산운용	143,534,048	10,014,964	133,519,084	52,966,424	15,548,522
PT Kiwoom sekuritas Indonesia	38,472,917	11,208,078	27,264,839	1,945,859	1,679,695
키움프라이빗에쿼티	69,560,568	17,518,759	52,041,809	5,093,181	(27,763)
키움캐피탈주식회사	279,589,717	181,697,868	97,891,849	2,755,728	(1,453,438)
키움성장15호세컨더리투자조합	32,773,518	482,185	32,291,333	7,338,661	6,729,414
글로벌강소기업키움엔에이전략 창업벤처전문 사모투자합자회사	58,689,775	583,716	58,106,059	215,559	(5,886,191)
메리츠 AI-G Return 전문투자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	53,325,422	200,324	53,125,098	3,578,421	1,462,815
메리츠 AI-Kbond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	55,872,181	2,741,337	53,130,844	5,810,354	2,980,844
키움K고래멀티전략전문사모투자신탁제1호C-S	155,486,555	41,755,404	113,731,151	24,711,979	(6,831,178)
메리츠AI-EuroBond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	81,370,152	46,015	81,324,137	1,068,853	1,024,138
키움마일스톤유럽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6-A호	41,884,857	12,478	41,872,379	114,835	(2,188,130)
키움마일스톤유럽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6-B호	41,884,857	12,478	41,872,379	114,835	(2,188,130)
마스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48호	38,952,062	27,738,402	11,213,660	879	(586,340)
넛지제일차주 외 32개 유동화 SPC	819,863,264	820,315,768	(452,504)	30,142,707	(460,721)

(주1) 다우홍콩은 연결재무제표의 요약재무정보입니다.

<전기 및 전기말>

(단위: 천원)

종속기업	자산	부채	자본	영업수익 (매출액)	당기순이익 (손실)
키움증권㈜	9,810,993,482	8,412,886,166	1,398,107,316	997,970,943	183,324,248
키움이앤에스	70,928,533	22,274,165	48,654,368	24,896,663	2,152,867
다우홀콩(주1)	43,857,410	12,962,278	30,895,132	5,050,684	925,314
키다리이엔티	73,308,253	46,263,095	27,045,158	18,732,893	-3,604,517
키움인베스트먼트	53,123,003	5,689,264	47,433,739	5,867,821	2,519,392
키움저축은행	1,043,710,346	924,301,229	119,409,117	75,890,597	23,538,810
키움에스저축은행	683,068,107	594,656,895	88,411,212	37,032,969	11,802,719
키움투자자산운용㈜	133,343,877	11,094,450	122,249,427	49,763,741	15,633,024
PT Kiwoom securities Indonesia	36,000,712	9,598,322	26,402,390	1,849,433	1,135,721
키움프라이빗에쿼티	52,970,654	901,081	52,069,573	5,653,241	2,922,912
키움장기코어밸류	43,260,037	86,012	43,174,025	9,790,184	9,122,856
키움달러표시우량채권증권투자자산채권	30,031,708	1,375	30,030,333	2,858,323	233,702
메리츠 AI-G Return 전문투자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	51,671,476	9,194	51,662,282	2,715,202	1,512,282

### 1.3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변동

#### 1.3.1 당기 중 신규로 연결에 포함된 회사

종속기업명	사유
키움캐피탈주식회사	신규취득
Kiwoom Hong Kong Limited	신규취득
Kiwoom Singapore Pte. Ltd	신규취득
Kiwoom BVI One Limited	신규취득
Kiwoom BVI Two Limited	신규취득
Kiwoom BVI Three Limited	신규취득
메리츠 AI-Kbond전문투자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	신규취득
키움글로벌하이일드명품셀렉션증권투자신탁	신규취득
라이노스 K바이오메자닌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신규취득
씨스퀘어 벤처투자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4호	신규취득
지브이에이 코스닥 IPO-I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신규취득
포커스K3 슈퍼리치 블루버드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신규취득
키움키워드림TDF2025 증권투자신탁제1호	신규취득
키움키워드림TDF2030 증권투자신탁제1호	신규취득
키움키워드림TDF2035 증권투자신탁제1호	신규취득
키움키워드림TDF2040 증권투자신탁제1호	신규취득
키움키워드림TDF2045 증권투자신탁제1호	신규취득
키움K고래멀티전략전문사모투자신탁1호C-S	신규취득
키움K200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C-F	신규취득
프렌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1호	신규취득
키움뉴마진글로벌파트너쉽 사모투자합자회사	신규취득

글로벌강소기업키움엠엔에이전략 창업벤처전문 사모투자합자회사	신규취득
메리츠AI-EuroBond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	신규취득
키움아세안성장에이스(주식)C-F	신규취득
키움글로벌금리와물가연동증권(H)C-F	신규취득
키움인도네시아프런티어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신규취득
키움마일스톤유럽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6-A호	신규취득
키움마일스톤유럽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6-B호	신규취득
마스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48호	신규취득
엘티더블유제일차주 외 22개 유동화 SPC	신규취득

### 1.3.2 당기 중 연결에서 제외된 회사

종속기업명	사유
한국에이에스피	사업결합
키움더드림단기채증권투자신탁	보유지분의 감소
브레인TG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7호	보유지분의 처분
키움ROKI1멀티에셋 로보어드바이저펀드	보유지분의 처분
이앤제네커 신기술투자조합	보유지분의 처분
키움작은거인 50	보유지분의 처분
KTB공모주하이일드사모증권 3호	보유지분의 처분
글로벌원사모공모주투자신탁제1호	보유지분의 처분
디에스 IPO Selection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보유지분의 처분
KS Asia Absolute Return Fund IC Class G	보유지분의 처분
KS Korea Credit Fund 1 IC Class B	보유지분의 처분

## 1.4 비연결구조화기업

### 1.4.1 연결기업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구조화기업의 형태

(단위: 천원)

유형	목적	주요 자본조달 방법
자산유동화 SPC	기초자산의 유동화	ABL, ABCP 발행 등
부동산금융	부동산개발 및 사회간접시설 투자, 부동산 투자	출자 및 차입
선박금융 및 인수금융	선박건조 또는 매입, NPL매입, 기업인수	출자 및 차입
투자펀드	투자재산의 운용 및 관리	수익증권 발행 등

### 1.4.2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위험

(단위: 천원)

구분	자산유동화 SPC	부동산금융	선박금융 및 인수금융	투자펀드
자산:				

유가증권	26,711,880	1,250,000	450,000	1,402,935,413
최대손실노출금액:				
금융자산	26,711,880	1,250,000	450,000	1,402,935,413
신용공여 및 기타약정	572,785,730	-	-	-

## 2. 중요한 회계정책 및 재무제표 작성기준

###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기업의 연결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는 아래 회계정책에서 별도로 언급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연결재무제표는 원화로 표시되어 있으며, 다른 언급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천원 단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2.2 연결기준

연결재무제표는 매 회계연도 12월 31일 현재 지배기업 및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배력은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을 때 획득됩니다. 구체적으로 연결기업이 다음을 모두 갖는 경우에만 피투자자를 지배합니다.

- 피투자자에 대한 힘(즉 피투자자의 관련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갖게 하는 현존 권리)
-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인한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 또는 권리
- 투자자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

피투자자의 의결권의 과반수 미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연결기업은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갖고 있는지를 평가할 때 다음을 포함한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투자자와 다른 의결권 보유자간의 계약상 약정
- 그 밖의 계약상 약정에서 발생하는 권리
- 연결기업의 의결권 및 잠재적 의결권

연결기업은 지배력의 세 가지 요소 중 하나 이상에 변화가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있는 경우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 재평가합니다. 종속기업에 대한 연결은 연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시점부터 지배력을 상실하기 전까지 이루어집니다. 기중 취득하거나 처분한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은 연결기업이 지배력을 획득한 날부터 연결기업이 종속기업을 더 이상 지배하지 않게 된 날까지 포괄손익계산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는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을 연결기업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간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모든 연결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은 전액 제거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지배력을 상실한 날에 종속기업의 자산(영업권 포함), 부채, 비지배지분 및 자본의 기타 항목을 제거하고 그에 따른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잔여 투자는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2.3 중요한 회계정책

### 2.3.1 사업결합 및 영업권

사업결합은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된 이전대가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 금액의 합계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결합에 대해 취득자는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을 공정가치 또는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중의 비지배지분의 비례적 지분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취득관련원가는 발생시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취득일에 존재하는 계약조건, 경제상황, 취득자의 영업정책이나 회계정책 그리고 그 밖의 관련조건에 기초하여 분류하거나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는 피취득자의 주계약에서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취득자가 피취득자에게 조건부 대가를 제공한 경우 동 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이전대가에 포함하고 있으며 자산이나 부채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이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재측정하지 않고 정산시 자본내에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조건부 대가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적절한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와 비지배지분 금액 및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의 합계액이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취득한 순자산의 공정가치가 이전대가 등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연결기업은 모든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정확하게 식별하였는지에 대해 재검토하고 취득일에 인식한 금액을 측정하는 데 사용한 절차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재검토 후에도 여전히 이전대가 등의 합계액이 취득한 순자산의 공정가치보다 낮다면 그 차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 영업권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손상검사 목적상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취득일로부터 배분되며, 이는 배분대상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피취득자의 다른 자산이나 부채가 할당되어 있는지와 관계없이 이루어집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 내의 영업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되는 영업과 관련된 영업권은 처분손익을 결정할 때 그 영업의 장부금액에 포함하며, 현금창출단위 내에 존속하는 부분과 처분되는 부분의 상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 2.3.2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관계기업은 지배기업이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입니다. 유의적인 영향력은 피투자자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지만 그러한 정책의 지배력이나 공동지배력은 아닙니다.

공동기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그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입니다.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계약상 합의된 공유로서, 관련 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합니다.

연결기업은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는 최초 취득원가로 인식되며, 취득일 이후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순자산변동액 중 연결기업의 지분 해당액을 인식하기 위하여 장부금액을 가감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과 관련된 영업권은 해당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며 상각 또는 별도의 손상검사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영업에 따른 손익 중 연결기업의 지분 해당분은 연결손익계산서에 직접 반영되며 기타포괄손익의 변동은 연결기업의 기타포괄손익의 일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자본에 직접 반영된 변동이 있는 경우 연결기업의 지분 해당분은 자본변동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과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간 거래에 따른 미실현손익은 연결기업의 지분 해당분 만큼 제거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이익은 세효과 및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종속기업 비지배지분을 차감한 후의 연결기업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영업외손익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보고기간은 지배기업의 보고기간과 동일하며 연결기업과 동일한 회계정책의 적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재무제표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분법을 적용한 이후, 연결기업은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손상차손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합니다. 연결기업은 매 보고기간말에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가 손상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판단하고, 그러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하여 '지분법손익'의 계정으로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관계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하거나 공동기업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상실한 때에 종전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잔여 보유 지분이 있다면 그 잔여 지분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유의적인 영향력 및 공동지배력을 상실한 때의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의 장부금액과 잔여지분의 공정가치 및 처분대가와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 2.3.3 유동성/비유동성 분류

연결기업은 자산과 부채를 유동/비유동으로 재무상태표에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산은 다음의 경우에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하거나 소비할 의도가 있다.
-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한다.
-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서, 교환이나 부채 상환 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한 제한 기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이 아니다.

그 밖의 모든 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비유동자산(부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2.3.4 공정가치 측정

연결기업은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상품을 보고기간말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공정가치 측정은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거래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 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
- 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시장

연결기업은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는 시장참여자가 경제적으로 최선의 행동을 한다는 가정하에 시장참여자가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가정에 근거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참여자가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그 자산을 최고 최선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최고 최선으로 사용할 다른 시장참여자에게 그 자산을 매도하는 시장참여자의 능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상황에 적합하며 관련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대화하고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데 충분한 자료가 이용가능한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채무채표에서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시되는 모든 자산과 부채는 공정가치 측정에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구분됩니다.

- 수준 1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 공정가치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한 공정가치
- 수준 3 : 공정가치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이용한 공정가치

재무제표에 반복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연결기업은 매 보고기간 말 공정가치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에 기초한 분류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서열체계의 수준 간의 이동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공정가치 공시 목적상 연결기업은 성격과 특성 및 위험에 근거하여 자산과 부채의 분류를 결정하고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 2.3.5 외화환산

연결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지배기업의 기능통화인 원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결기업 내 개별기업은 각각의 기능통화를 결정하고 이를 통해 재무제표 항목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직접 연결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해외영업의 처분시 직접 연결법의 사용함에 따른 금액을 반영한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 거래와 잔액

연결실체의 개별기업들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기능통화 외의 통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의 기능통화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환산차이는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 회피를 위한 항목에서 발생하는 환산차이는 해당 순투자자의 처분시점까지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처분시점에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인세효과 역시 동일하게 자본항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외화표시 비화폐성 항목은 최초 거래 발생일의 환율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외화표시 비화폐성 항목은 공정가치 측정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 항목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해당 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손익의 인식항목과 동일하게 기타포괄손익 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의 최초 인식에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거래일은 연결기업이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한 날입니다. 선지급이나 선수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연결기업은 대가의 선지급이나 선수취로 인한 거래일을 각각 결정합니다.

#### 해외사업장의 환산

해외사업장의 자산·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환율을, 손익계산서 항목은 당해연도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며 이러한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자본의별도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자본에 인식된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해외사업장의 처분시점에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발생하는 영업권과 자산·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정가치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자산·부채로 보아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 2.3.6 금융상품: 최초인식과 후속측정

금융상품은 거래당사자 어느 한쪽에게는 금융자산이 생기게 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이 생기게 하는 모든 계약입니다.

#### (1) 금융자산

##### 최초 인식과 측정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시점에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그리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최초 인식 시점에 금융자산의 분류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연결기업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연결기업은 금융자산을 최초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원가를 가감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은 기업 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결정된 거래가격으로 측정합니다.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SPPI)되어야 합니다. 이 평가는 SPPI 테스트라고 하며, 개별 상품 수준에서 수행됩니다.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연결기업의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해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방법과 관련됩니다.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의 원천이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인지, 매도인지 또는 둘 다 인지를 결정합니다.

시장의 합의나 규제에 의해 설정된 기간 프레임 내에서 금융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요구되는 금융자산의 매입 또는 매도(정형화된 거래)는 거래일에 인식됩니다. 즉, 연결기업이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기로 약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 후속측정

후속 측정을 위해 금융자산은 아래 네 가지의 범주로 분류됩니다.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 누적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 제거시 누적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지분상품)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연결기업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EIR)법을 사용하여 측정되며, 손상을 인식합니다. 자산의 제거, 변경 또는 손상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연결기업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으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에서,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그리고 손상 또는 환입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되어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금융자산의 제거 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공정가치 누적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됩니다.

연결기업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채무상품에 포함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지분상품)

최초 인식 시점에, 연결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서의 지분의 정의를 충족하고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지분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되지 않습니다. 배당은 연결기업이 금융자산의 원가 중 일부를 회수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되며, 이를 제외하고는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을 때 손익계산서상 기타수익으로 인식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은 손상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연결기업은 비상장지분상품에 대해서도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 최초 인식 시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자산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되는 금융자산을 포함합니다. 단기간 내에 매도하거나 재구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파생상품은 효과적인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지 않은 금융자산은 사업모형에 관계없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 및 측정됩니다. 상기 문단에서 서술된 것과 같이 채무상품이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회계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면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표시되며, 공정가치의 순변동은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이 범주는 파생상품과 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하지않은 상장지분상품을 포함합니다. 상장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은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복합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경제적인 특성과 위험이 주계약에 밀접하게 관련되지않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인 별도의 상품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며, 복합계약이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다면 주계약으로부터 분리하여 별도의파생상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금흐름을 유의적으로 변경시키는 계약 조건의 변경이 있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만 재평가가 발생합니다.

주계약이 금융자산인 복합계약에서 내재파생상품은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지 않습니다. 주계약인 금융자산과 내재파생상품은 상품 전체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 제거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의 일부 또는 비슷한 금융자산의 집합의 일부)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제거됩니다.

-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가 소멸되거나
- 연결기업이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양도하거나 양도(pass-through) 계약에 따라 수취한 현금흐름 전체를 중요한 지체 없이 제3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 경우에 연결기업은 금융자산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거나 금융자산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보유하지도 않으나 자산에 대한 통제를 이전

연결기업이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이전하거나 양도(pass-through) 계약을 체결할 때, 자산을 소유함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유지하는지를 평가합니다. 연결기업이 금융자산의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이전하지도 않았다면, 해당 금융자산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그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합니다. 이 경우에, 연결기업은 관련된 부채를 인식합니다. 양도된 자산과 관련된 부채는 연결기업이 보유한 권리와 의무를 반영하여 측정합니다.

보증을 제공하는 형태인 지속적 관여는, 양도된 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 중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 금융자산의 손상

연결기업은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을 제외한 모든 채무상품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ECL)에 대한 총당금을 인식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계약상 수취하기로 한 현금흐름과 연결기업이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현금흐름의 차이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예상되는 현금흐름은 보유한 담보를 처분하거나 계약의 필수 조건인 그 밖의 신용보강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포함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두 개의 stage로 인식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없는 신용 익스포저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은 향후 12개월 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채무 불이행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반영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는 신용 익스포저에 대하여, 손실충당금은 채무불이행 사건이 발생하는 시기와 무관하게 익스포저의 남은 존속기간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도록 요구됩니다.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에 대하여, 연결기업은 기대신용손실 계산에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결기업은 신용위험의 변동을 추적하지 않는 대신에, 각 결산일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연결기업은 특정 채무자에 대한 미래전망정보와 경제적 환경을 반영하여 조정된 과거 신용손실 경험에 근거하여 충당금 설정률표를 설정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에 대하여, 연결기업은 낮은 신용위험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매 결산일에, 연결기업은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사용하여 채무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고려되는지를 평가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위해서, 연결기업은 채무상품의 내부신용등급을 재평가합니다

연결기업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이 최상위 투자등급에 해당하는 상장 채권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낮은 신용 위험 투자자산으로 평가됩니다. 연결기업의 정책은 이러한 상품을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 이후에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다면 손실충당금은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근거하여 산출됩니다. 연결기업은 채무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결정하고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신용평가기관의 등급을 사용합니다.

연결기업은 계약상 지급이 유의적으로 연체되는 경우에 채무 불이행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 연결기업은 내부 또는 외부 정보가 연결기업에 의한 모든 신용보강을 고려하기 전에는 연결기업이 계약상의 원금 전체를 수취하지 못할 것을 나타내는 경우에 금융자산에 채무불이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계약상 현금흐름을 회수하는 데에 합리적인 기대가 없을 때 제거됩니다.

## (2) 금융부채

### 최초인식 및 측정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대출과 차입, 미지급금 또는 효과적인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으로 적절하게 분류됩니다.

모든 금융부채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대여금, 차입금 및 미지급금의 경우에는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를 차감합니다.

### 후속측정

금융부채의 측정은 아래에서 언급된 분류에 따릅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와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부채를 포함합니다.

금융부채가 단기간 내에 재매입되는 경우에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이 범주는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정의된 위험회피관계에 있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을 포함합니다. 또한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은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단기매매항목인 금융부채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최초 인식 시점에만 지정됩니다.

#### 대여금 및 차입금

최초 인식 이후에, 이자부 대여금과 차입금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 원가로 측정됩니다. 부채가 제거되거나 유효이자율 상각 절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 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상각후원가는 유효이자율의 필수적인 부분인 수수료나 원가에 대한 할인이나 할증액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 제거

금융부채는 지급 의무의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 제거됩니다. 기존 금융부채가 대여자는 동일하지만 조건이 실질적으로 다른 금융부채에 의해 교환되거나, 기존 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이러한 교환이나 변경은 최초의 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부채를 인식하게 합니다. 각 장부금액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 (3)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상계 권리를 현재 가지고 있거나,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의도가 있는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상계하여 순액으로 표시됩니다.

#### 2.3.7 현금및현금성자산

재무상태표상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통예금과 소액현금 및 취득당시 만기가 3개월이내인 단기성 예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금흐름표상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이러한 현금및현금성자산에서 당좌차월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 2.3.8 파생금융상품과 위험회피회계

파생상품은 거래형태에 따라 선도, 선물, 옵션, 스왑 등으로 구분하며, 거래목적에 따라 거래시점에서 매매목적거래 또는 위험회피거래로 구분합니다.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말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였으나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않다면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이라면 당기손익의 인식시점은 위험회피관계의 특성에 따라 좌우됩니다.

공정가치가 정(+ )의 값을 갖는 파생상품은 금융자산으로 인식하며, 부(-)의 값을 갖는 파생상품을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1) 내재파생상품

파생상품이 아닌 주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이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을 가지는 별도의 금융상품 등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며 합성계약의 공정가치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 2) 위험회피회계

연결기업은 파생상품, 내재파생상품 또는 회피대상위험이 외화위험인 경우에는 일부파생금융상품을 공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 또는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에 대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위험회피개시시점에 위험관리목적, 위험회피전략 및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관계를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기업은 위험회피의 개시시점과 후속기간에 위험회피수단이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또는 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하는데 매우 효과적인지 여부를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 3) 공정가치위험회피

연결기업은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변동과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은 연결포괄손익계산서상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항목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 4) 현금흐름위험회피

연결기업은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분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에 누계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항목에 누계한 위험회피수단 평가손익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때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으며, 재분류된 금액은 연결포괄손익계산서상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항목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에 따라 향후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를 인식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항목에 누계한 위험회피수단 평가손익은 자본에서 제거하여 비금융자산 또는 비금융부채의 최초 원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는 연결기업이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을 철회하는 경우,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종료, 행사되는 경우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 중단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중단시점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항목에 누계한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은 계속하여 자본으로 인식하고 예상거래가 궁극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될 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본으로 인식한 위험회피수단의 누적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 2.3.9 재고자산

연결기업은 재고자산을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고자산별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단위원가는 개별법(상품) 및 이동평균법(제품 및 원재료)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 2.3.10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연결기업은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나 분배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과 처분자산집단은 매각부대원가 차감 후 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매각부대원가는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처분에 직접 귀속되는 증분원가(금융원가와 법인세비용 제외)입니다.

매각예정으로의 분류 조건은 매각이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에서 즉시 매각 가능하고 그 매각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충족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각을 완료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조치들은 그 매각이 유의적으로 변경되거나 철회될 가능성이 낮음을 보여야 하며, 매각예정으로 분류한 시점에서 1년 이내에 매각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은 감가상각 또는 상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각예정 또는 분배예정으로 분류된 자산과 부채는 재무상태표에서 별도의 유동항목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처분자산집단은 중단영업에 해당됩니다.

-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이다.
-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을 처분하려는 단일 계획의 일부이다.
- 매각만을 목적으로 취득한 종속기업이다.

연결기업은 세후중단영업손익을 계속영업의 결과에서 제외하고 손익계산서에 단일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다른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에서는 별도로 언급하고 있지 않은 경우 계속영업의 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2.3.11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은 관련 거래원가를 가산한 취득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발생시점에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한 대체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상적인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을 통하여 더 이상 미래경제적효익을 얻을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재무제표에서 제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순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는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자산의 사용목적이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투자부동산에서 다른 계정으로 대체하거나 다른 계정에서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분류에 따라서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인식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는 투자부동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추정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건물은 20~50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 2.3.12 유형자산

건설중인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유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가에는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한 대체원가 및 장기건설 프로젝트의 차입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주요 부분이 주기적으로 교체될 필요가 있는 경우 연결기업은 그 부분을 개별자산으로 인식하고 해당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검사원가와 같이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모든 수선 및 유지비용은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부지를 복원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이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지출의 현재가치를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추정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건물은 20~50년, 기계장치 및 기타 유형자산은 3 ~ 5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은 처분하거나 사용 또는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 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경우 제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순처분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는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매 회계연도말에 유형자산의 잔존가치,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 2.3.13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부수되는 조건의 이행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산 취득에 사용될 목적으로 수령한 상환의무가 없는 정부보조금 중 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경우에는 이를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고 있습니다.

### 2.3.14 차입원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시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차입원가는 이자금의 차입과 관련되어 발생한 이자와 기타 원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2.3.15 무형자산

연결기업은 개별적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매수시점의 공정가치로 계상하며 최초 취득 이후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직접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발비를 제외한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은 발생시점에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과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으로 구분되는 바,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해당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하고손상징후가 파악되는 경우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은 매 회계연도말에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예상 사용기간의 변경이나 경제적효익의 소비형태 변화 등으로 인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상각비는 해당 무형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상각비는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잔존가치를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추정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5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되, 매년 개별적으로 또는현금창출단위에 포함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해당 무형자산에 대하여 비한정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전진적인 방법으로 유한한 내용연수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무형자산 제거시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인한 손익은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연구개발비

연결기업은 연구에 대한 지출을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프로젝트와 관련된 개발비의 경우, i)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고, ii)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의도와 능력이 있으며, iii) 이를 위한 충분한 자원이 확보되어 있고, iv) 무형자산이 어떻게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수 있는 지를 제시할 수 있으며, v)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산으로 인식한 개발비는 원가모형을 적용하여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직접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으며, 개발이 완료되어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경제적효익의 예상 지속기간에 걸쳐 상각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자산으로 인식한 개발비에 대하여 개발기간동안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2.3.16 비금융자산의 손상

##### 비금융자산의 손상

연결기업은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존재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징후가 존재하는 경우 또는 매년 자산에 대한 손상검사가 요구되는경우, 연결기업은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며, 개별자산별로 결정하나 해당 개별자산의 현금유입이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의 현금유입과 거의 독립적으로 창출되지 않는 경우, 해당 개별자산이 속한 현금창출단위별로 결정됩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은 손상된 것으로 보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게 됩니다. 사용가치는 해당 자산의 기대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를 화폐의 시간가치와 해당 자산의 위험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순공정가치는 공개 시장에서 거래되는 종속기업들의 주가 또는 다른 이용가능한 공정가치 평가지표 등을 사용한 적절한 평가모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손상된 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자산으로서 이전에 인식한 재평가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

전 재평가금액을 한도로 재평가잉여금과 상계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하여 매 보고기간말에 과거에 인식한 자산의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감소하였다는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그러한 징후가 있는 경우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인식한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의 손상차손은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의 자산의 장부금액의 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증가시키고 이러한 손상차손환입은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는 자산의 경우에는 동 환입액을 재평가잉여금의 증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검사에 있어 각각의 기준이 추가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 영업권

연결기업은 매년 및 손상징후가 발생하였을 때 영업권의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한 손상검사는 해당 영업권과 관련된 각각의 현금창출단위 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영업권에 대하여 인식한 손상차손은 이후에 환입하지 않습니다.

#### 무형자산

연결기업은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에 대하여 매년 및 손상징후가 발생하였을 때 개별 자산별 또는 현금창출단위별로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2.3.17 충당부채

연결기업은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해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연결기업이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와 관련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되는 비용은 제3자의 변제와 관련하여 인식한 금액과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 2.3.18 법인세

##### 당기법인세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 (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에 직접 반영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 법인세는 자본에 반영되며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관련 세법 규정의 해석과 관련해서 법인세 환급액에 대한 회수가능성을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 이연법인세

연결기업은 자산 및 부채의 재무보고 목적상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하는 경우
- 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로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하는 경우
-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지분과 관련한 가산할 일시적차이로서 동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또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감할 일시적차이, 미사용 세액공제와 세무상 결손금이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로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이연법인세자산이 발생하는 경우
-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지분과 관련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서 동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동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감액된 금액은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범위내에서 다시 환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 보고기간 말마다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미래 과세소득에 의해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아진 범위까지 과거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항목은 해당 거래에 따라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거나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한 경우 혹은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유의적인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의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 판매세

수익, 비용 및 자산은 관련 판매세를 차감한 순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산또는 용역의 구매와 관련한 판매세가 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자산의 취득원가의 일부 또는 비용항목의 일부로 인식하고 관련 채권과 채무는 판매세를 포함한 금액

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 또는 과세당국에 납부해야 할 판매세의 순액은 재무상대표의 채권 또는 채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2.3.19 종업원급여

연결기업은 확정급여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바, 관련 기금에 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확정급여제도의 급여원가는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각각의 제도에 대해 결정됩니다. 보험수리적손익,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재측정요소는 발생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과거근무원가는 다음 중 이른 날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할 때
- 관련되는 구조조정원가나 해고급여를 인식할 때

순이자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근무원가와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를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의 항목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2.3.20 주식기준보상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은 부여일에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가득기간에 걸쳐 종업원 급여비용으로 인식됩니다. 가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은 매 보고기간말에 비시장성과조건을 고려하여 재측정되며, 당초 추정치로부터의 변동액은 당기손익과 자본으로 인식됩니다.

주식선택권의 행사 시점에 신주를 발행할 때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거래비용을 제외한 순유입액은 자본금(명목가액)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인식됩니다.

### 2.3.21 자기주식

연결기업은 자기주식을 자본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자기주식의 취득, 매각, 발행 또는 취소에 따른 손익은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지 않으며, 장부금액과 처분대가의 차이는 기타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 2.3.22 현금배당

지배기업은 배당을 지급하기 위해 분배가 승인되고 더 이상 기업에게 재량이 없는 시점에 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주에 대한 분배는 주주에 의한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대응되는 금액은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 2.3.23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연결기업은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 관련 솔루션의 개발 및 판매와 인터넷 관련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연결기업은 재화나 용역의 통제가 고객에 이전되었을 때, 해당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을 권리에 갖게 될 것으

로 예상한 대가를 반영하여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기업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전에 정해진 각 재화나 용역을 통제하므로 본인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 소프트웨어 등의 판매

소프트웨어 등의 판매 수익은 자산에 대한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는 시점인 소프트웨어 등의 인도 및 사용 가능한 시점에 인식됩니다. 일반적인 채권 회수기간은 인도 후 30일에서 60일입니다. 연결기업은 계약 내의 다른 약속이 거래대가의 일부분으로 배부되어야 하는 별도의 수행의무인지 고려합니다. 소프트웨어 등 판매 거래 가격을 산정할 때, 연결기업은 변동대가 및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고려합니다.

#### (1) 변동대가

계약이 변동대가를 포함한 경우에 연결기업은 고객에 약속한 재화를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금액을 추정합니다. 변동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 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환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만 변동대가를 계약의 개시 시점에 추정하고 거래가격에 포함합니다.

#### (2) 유의적인 금융요소

일반적으로 연결기업은 고객으로부터 단기선수금을 수령합니다. 기준서 제1115호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연결기업은 계약을 개시할 때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시점과 고객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 간의 기간이 1년 이내일 것이라고 예상된다면 약속한 대가(금액)에 유의적인 금융요소의 영향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 고객충성제도

연결기업은 고객충성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은 이 제도에 따라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적립 받습니다. 고객충성제도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은 고객에게 중요한 권리이므로 별도의 수행의무에 해당됩니다. 포인트는 판매가격에 고객별 등급을 고려한 지급비율에 기초하여 배부되거나, 이벤트 진행에 따라 지급됩니다. 지급된 포인트는 고객충성제도에 따라 수익에서 차감되며, 사용되거나 소멸될 때까지 계약부채로 인식됩니다. 포인트 가격을 유료 판매가격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고객충성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매 분기별로 포인트 사용 및 잔액 현황에 따라 계약부채를 조정하며, 조정된 계약부채 금액은 손익에 반영됩니다.

####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보수 용역

연결기업은 고객 맞춤형 한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구축된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합니다. 연결기업은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구축된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 용역에 대한 수익을 용역진행률에 따라 기간에 걸쳐 인식합니다. 고객은 연결기업이 수행하는 용역에 대한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하기 때문입니다.

#### 계약 잔액

#### (1) 계약자산

계약자산은 고객에게 이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그 대가를 받을 권리입니다. 고객이 대가를 지급하기 전이나 지급기일 전에 연결기업이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경우 그 대가를 받을 기업의 권리로 그 권리에 시간의 경과 외의 조건이 있는 자산은 계약자산입니다.

## (2) 매출채권

수취채권은 무조건적인 연결기업의 권리를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시간만 경과하면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3) 계약부채

계약부채는 연결기업이 고객에게서 이미 받은 대가(또는 지급기일이 된 대가)에 상응하여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야 하는 기업의 의무입니다. 만약 연결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 이전하기 전에 고객이 대가를 지불한다면, 지급이 되었거나 지급기일 중이른 시점에 계약부채를 인식합니다. 계약부채는 연결기업이 계약에 따라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 2.3.24 신탁업무

연결기업은 신탁업무 규정에 따라 신탁재산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신탁계정으로부터 신탁재산의 운용, 관리 및 처분과 관련하여 취득한 영업보수를 영업수익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 2.3.25 환매조건부채권

연결기업은 환매조건부로 채권을 매수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환매조건부채권매수의 과목으로 하여 대여금및수취채권으로 표시하고, 환매도하는 경우에 환매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를 환매조건부채권매수이자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환매조건부로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 채권매도가격을 환매조건부채권매도의 과목으로 하여 차입부채로 표시하고, 환매수하는 경우에 환매수가액과 매도가액의 차이를 환매조건부채권매도이자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2.3.26 매도유가증권

연결기업은 유가증권의 대차거래를 행하고 있으며, 유가증권 차입시 차입유가증권으로 처리하고 동 차입유가증권의 매도시에 매도유가증권으로 처리하며, 매입 상환시 매도가격과 매수가격의 차이를 단기매매금융부채처분손익으로 인식하고, 매도유가증권의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를 단기매매금융부채평가손익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2.4 제·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연결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와 제1109호를 최초 적용하였습니다. 제정된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한 변경의 성격과 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몇몇의 다른 개정사항과 해석서가 2018년에 최초로 적용되지만, 연결기업의 재무제표에 영향이 없습니다. 연결기업은 공표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기준서, 해석서, 개정사항을 조기 적용한 바 없습니다.

### 2.4.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는 기업회계기준서 제 1011호 '건설계약', 기업회계기준서 제 1018호 '수익' 및 관련 해석서를 대체하며, 제한된 예외사항들과 함께 고객과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

기는 수익의 회계처리를 위해 5단계법을 확립하였으며, 재화나 용역의 이전의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를 반영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는 기업이 고객과의 계약에 5단계법을 적용할 때 관련된 모든 사실과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들인 원가와 계약을 이행할 때 드는 원가에 대한 회계처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보다 확대된 공시사항들을 요구합니다.

연결기업은 2018년 1월 1일을 최초적용일로 누적효과 일괄조정법을 사용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도입하였습니다. 누적효과 일괄조정법에서는 새로운 기준서를 최초적용일 현재의 모든 계약에 대해 혹은 최초적용일 현재 종료되지 않은 계약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2018년 1월 1일의 모든 계약에 새로운 기준서를 적용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최초 적용으로 인한 누적효과는 최초 적용일에 이익잉여금의 기초잔액에서 조정됩니다. 따라서 비교정보는 재작성되지 않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제1018호 그리고 관련 해석서에 따라 보고됩니다.

동 기준서의 도입으로 연결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주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수행의무의 식별

연결기업은 소프트웨어등의 판매를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일부 판매계약에 유지보수업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서는 하나의 계약에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여러 약속이 포함되어 있고, 그 재화나 용역이 구별된다면 각각의 약속은 별도의 수행의무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하며, 거래가격은 일반적으로 계약에서 약속한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의 상대적인 개별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배분해야 합니다.

#### 나.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각각의 수행의무를 한 시점에 이행하는지,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지에 따라 수익인식 시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행의무를 일정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지는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① 고객이 기업이 업무를 수행하는 대로 효익을 얻고 동시에 소비한다. ② 기업이 만드는 대로 고객이 그 자산을 통제한다. ③ 기업이 업무를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자체에는 대체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업무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가능한 지급청구권이 있다.

기업의 대부분의 계약은 계약기간 동안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연결기업이 만들거나 가치를 높이는 대로 그 자산을 고객이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수행의무에 배분된 거래가격을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또한 진행률을 측정하는 목적에 따라,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수행 정도를 나타내지 못하는 투입물의 영향은 투입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연결기업은 제품판매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유지보수업무를 별도의 구분되는 수행의무로 식별하였으며, 수행의무는 약속된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에 걸쳐 이행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준서 제1115호 최초 적용에 따라 연결기업의 기초 이익잉여금 394백만원 감소 및 계약부채 3,255백만원 증가하였고 외상매출금 435백만원은 계약자산으로 선수금

2,142백만원 및 선수수익 3,361백만원은 계약부채로 재분류 되었습니다.

기준서 제1115호 적용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기간과 그 시점에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 항목은 계약자산 및 계약부채 재분류 각각 807백만원 증가 및 15,025백만원 증가 이외에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2.4.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금융상품 회계의 세가지 측면, 즉 분류와 측정, 손상, 위험회피회계 모두를 통합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대체합니다

연결기업은 2018년 1월 1일의 최초 적용일부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전진적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연결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라 당기 표시되는 비교표시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으로 인한 차이는 이익잉여금 및 기타자본 구성요소에 반영되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도입의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상품의 분류와 측정

(1-1) 금융상품의 분류와 측정에 대한 정책 변경 관련 이익잉여금 변동내역

(단위: 천원)

조정 내역	주석	금액
기초이익잉여금 - 변경 전		804,324,148
매도가능증권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재분류	①	(3,621,261)
매도가능증권에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재분류	②	573,842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의 손실충당금 증가	③	(3,649)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의 자기신용위험 조정	④	(947,113)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대출채권의 신용손실충당금 증가	⑤	(7,395,987)
금융보증부채에 대한 기대신용손실 반영	⑥	(671,007)
미사용약정한도에 대한 기대신용손실 반영	⑦	(816,224)
신용손실충당금에 대한 이연법인세 증가	③, ⑤, ⑥, ⑦	2,140,568
기준서 제1109호 도입으로 인한 총 잉여금 조정		(10,740,831)
기초 이익잉여금 - 변경 후		793,583,317

(1-2) 연결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최초적용일인 2018년 1월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에 적용되는 사업모형을 평가하고 분류 변경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재분류로 인한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당기초 금융자산	주석	당기손익-공정가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전기는 매)	상각후원가 (전기는 만기보유와 대여금및)	금융자산 계
----------	----	-----------	---------------------	------------------------	--------

			도가능금융자산)	수취채권)	
기초 장부금액-기준서 제1039호		6,230,614,229	770,984,978	4,624,819,765	11,626,418,972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재분류	①	314,366,112	(314,366,112)	-	-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상각후원가로 재분류	⑨	-	(500,000)	500,000	-
대출채권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재분류	⑧	22,824,305	-	(22,824,305)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에 대한 신용손실충당금 산출	③, ⑤	-	-	(15,512,235)	(15,512,235)
기초 장부금액-기준서 제1109호		6,567,804,646	456,118,866	4,586,983,225	11,610,906,737

(단위: 천원)

구 분	주석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변동	이익잉여금변동
기초 장부금액-기준서 제1039호		6,309,982	804,324,148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재분류	①	3,621,261	(3,621,261)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지분상품을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으로 재분류	②	(573,842)	573,842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의 손실충당금 증가	③	-	(3,649)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의 자기신용위험 조정	④	947,113	(947,113)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대출채권의 신용손실충당금 증가	⑤	-	(7,395,987)
금융보증부채에 대한 기대신용손실 반영	⑥	-	(671,007)
미사용약정한도에 대한 기대신용손실 반영	⑦	-	(816,224)
신용손실충당금에 대한 이연법인세 증가	③, ⑤ ⑥, ⑦	-	2,140,568
합 계		3,994,533	(10,740,831)
기초 장부금액-기준서 제1109호		10,304,515	793,583,317

①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재분류

당기초 현재 지분증권 81,660,655천원, 채무증권 232,705,457천원이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재분류되었습니다. 동 지분증권은 투자 목적 지분상품에 해당하며, 동 채무증권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을 나타내지 않아 상각후원가로 분류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당기 초 현재 관련기타포괄손익누계액 (-)3,621,261천원은 이익잉여금으로 재분류되었습니다.

② 매도가능증권에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재분류

당기초 현재 매도가능지분증권 손상누계액 573,842천원이 이익잉여금으로 재분류 되었습니다. 동 기준서에서는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의 경우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분류하는 선택을 할 경우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측정하며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이전되지 않습니다.

③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의 신용손실충당금 증가

기대손실모형 적용으로 인하여 채무상품에 대한 신용손실충당금 3,649천원(이연법인세효과 803천원)을 추가로 충당하였으며, 이로 인해 이익잉여금이 2,846천원 감소하였습니다.

④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의 자기신용위험 조정

당기초 현재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부채의 자기신용위험조정액 (-)947,113천원이 기타포괄

손익으로 재분류되었습니다. 동 기준서에서는 금융부채를 공정가치선택권을 적용하여 회계 처리한 경우, 공정가치 변동 중 신용위험 변동에 대한 부분은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대출채권의 신용손실충당금 증가  
기대손실모형 적용으로 인하여 대출채권에 대한 신용손실충당금 7,395,987천원(이연법인세효과 1,627,117천원)을 추가로 충당하였으며, 이로 인해 이익잉여금이 5,768,870천원 감소하였습니다.

⑥ 금융보증부채에 대한 기대신용손실 반영  
기대손실모형 적용으로 인하여 금융보증부채에 대한 신용손실충당금 671,007천원(이연법인세효과 147,622천원)을 추가로 충당하였으며, 이로 인해 이익잉여금이 523,385천원 감소하였습니다.

⑦ 미사용약정한도에 대한 기대신용손실 반영  
기대손실모형 적용으로 인하여 미사용대출약정한도에 대한 신용손실충당금 816,224천원(이연법인세효과 179,569천원)을 추가로 충당하였으며, 이로 인해 이익잉여금이 636,655천원 감소하였습니다.

⑧ 대출채권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재분류  
당기초 현재 대출채권 22,824,305천원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재분류되었습니다. 동 대출채권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을 나타내지 않아 상각후원가로 분류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⑨ 매도가능증권에서 상각후원가로 재분류  
당기초 현재 채무증권 500,000천원이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상각후원가로 재분류되었습니다. 동 채무증권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이루어져 상각후원가로 분류되는 조건을 충족하였습니다.

(1-3) 기준서 제1109호의 도입으로 인한 금융상품의 재분류  
최초적용일인 2018년 1월 1일 현재 기준서 제1109호의 도입으로 인한 금융자산의 재분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측정 범주		장부금액		
	기준서 제1039호	기준서 제1109호	기준서 제1039호	기준서 제1109호	차이
현금 및 예치금	상각후원가	상각후원가	555,694,481	555,694,481	-
매출채권	상각후원가	상각후원가	20,685,262	20,685,262	-
지분상품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415,162,072	415,162,072	-
	매도가능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457,651,975	457,651,975	-
	매도가능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73,953,189	73,953,189	-
채무상품	상각후원가	상각후원가	7,081,373	7,073,723	7,650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2,172,005,304	2,172,005,304	-
	매도가능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6,674,357	6,674,357	-
수익증권 등(주1)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739,085,091	739,085,091	-
	매도가능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232,705,457	232,705,457	-

파생결합증권 등 (주2)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2,904,361,762	2,904,361,762	-
대출채권	상각후원가	상각후원가	3,276,069,605	3,260,576,972	15,492,633
	상각후원가	당기손익-공정가치	22,824,305	22,824,305	-
기타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상각후원가	742,464,739	742,452,787	11,952
금융자산 계			11,626,418,972	11,610,906,737	15,512,235

(주1) 집합투자증권, 출자금, 손해배상공동기금 등을 포함한 내역입니다.

(주2) 파생상품자산, 파생결합증권 및 투자자예탁금별도예치금(신탁)을 포함한 내역입니다.

#### 2.4.3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2호 '외화 거래와 선지급·선수취 대가'(제정)

해석서는 대가를 외화로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발생한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제거하면서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를 최초 인식할 때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거래일은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날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선지급이나 선수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대가의 선지급이나 선수취로 인한 거래일을 각각 결정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이 연결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2.4.4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개정) - 투자부동산 계정대체

투자부동산의 개발 또는 건설과 관련한 계정대체 시점을 명확히 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투자부동산으로(에서) 용도 변경과 투자부동산 정의를 충족하게 되거나 중지되는 시점의 용도 변경에 대해 기술합니다. 경영진의 의도 변경만으로는 용도 변경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연결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3.5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개정) - 주식기준보상거래의 분류와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개정은 가득조건이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의 측정에 미치는 영향, 세금 원천징수의무로 인한 순결제특성이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 현금결제형에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분류를 바꾸는 조건변경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전진적으로 적용되며, 모든 개정사항을 적용하는 때에는 소급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결기업의 현금결제형 주식기준 보상의 회계정책은 개정사항의 분류 접근법과 일치합니다. 추가로, 연결기업은 세금 원천징수의무로 인한 순결제특성이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가 없으며, 주식기준보상거래에 조건 변경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사항이 연결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3.6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개정) - 개별기준 선택  
개정 기준서는 다음 사항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이와 유사한 기업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최초인식할 때 각각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선택하여 그 투자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투자기업이 아닌 기업이 투자기업인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그 기업이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투자기업인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이 보유한 종속기업의 지분에 대하여 투자기업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적용한 공정가치 측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은 (1) 투자기업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을 최초로 인식하는 시점, (2)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투자기업이 되는 시점, (3) 투자기업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최초로 지배기업이 되는 시점 중 가장 나중의 시점에 각각의 투자기업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해 개별적으로 합니다. 이 개정사항이 연결기업

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2.3.7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 최초채택 기업의 단기 면제 규정 삭제

기준서 제1101호 문단E3~E7는 최초채택기업의 단기 면제 규정으로, 의도한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삭제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연결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2.5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회계기준

연결기업의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 현재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아 연결기업이 채택하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기준서 및 해석서의 제·개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4호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 2015호 '운용리스: 인센티브',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7호 '법적 형식상의 리스를포함하는 거래의 실질에 대한 평가'을 대체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는 리스의 인식, 측정, 표시, 공시 원칙을 제시하였으며, 리스이용자로 하여금 모든 리스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에서의 금융리스 회계처리와 유사한 단일 모델로 회계처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동 기준서는 리스이용자에 대해 소액자산 리스(예: 개인 컴퓨터), 단기리스(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의 두 가지 인식 면제 규정을 포함합니다. 리스개시일에 리스이용자는 리스로 지급에 대한 부채(리스부채)를 인식하여야 하며, 기초자산에 대한 리스기간동안의 사용권을 나타내는 자산(사용권 자산)을 인식할 것입니다. 리스이용자는 리스부채의 이자비용과 사용권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개별적으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또한 리스이용자는 특정 사건(즉, 리스기간의 변동, 리스료를 산정할 때 사용한 지수나 요율의 변동으로 생기는 미래 리스료의 변동)이 발생하면 리스부채를 재측정해야 합니다. 리스이용자는 일반적으로 사용권 자산을 조정함으로써 리스부채의 재측정 금액을 인식할 것입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6호에서의 리스제공자 회계처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7호의 현행 회계처리와 비교하여 실질적으로 변동되지 않았습니다. 리스제공자는 모든 리스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7호와 동일한 분류 원칙을 사용하여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를 구분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6호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에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7호보다 광범위한 공시를 요구합니다.

동 기준서는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조기 적용이 허용되나 기업은 먼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5호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리스이용자는 완전 소급법과 누적효과 일괄조정 경과조치 중 하나를 사용하여 동 기준서를 적용할 수 있으며, 동 기준서 상 경과 규정은 몇가지 실무적 간편법을 허용합니다.

연결기업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 중에 있으며, 정해진 시행일에 제정 기준서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개정) - 부의 보상을 수반하는 중도상환특성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고(SPPI

요건)분류에 적절한 사업모형에서 보유되는 채무상품은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개정은 계약의 조기 청산을 발생시키는 사건이나 상황과 무관하고, 당사자가 계약의 조기 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하거나 받는 지와 관계없이 SPPI 조건을 충족하는 금융자산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소급하여 적용되고 2019년 1월 1일부터 유효하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이 개정사항이 연결기업의 재무상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개정) - 부의 보상을 수반하는 중도상환특성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고(SPPI 요건)분류에 적절한 사업모형에서 보유되는 채무상품은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개정은 계약의 조기 청산을 발생시키는 사건이나 상황과 무관하고, 당사자가 계약의 조기 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하거나 받는 지와 관계없이 SPPI 조건을 충족하는 금융자산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소급하여 적용되고 2019년 1월 1일부터 유효하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이 개정사항이 연결기업의 재무상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및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개정) - 투자자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간의 자산 매각 또는 출자  
이 개정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매각되거나 출자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 상실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와 기업회계기준서 1028호 간의 상충을 해결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동 기준서에서는 투자자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간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에서 정의된 사업에 해당하는 자산의 매각이나 출자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전액 인식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의 매각이나 출자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투자자의 지분과 무관한 손익까지만 인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서의 적용은 무기한 연기되었으나 조기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진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연결기업은 동 개정사항의 효력이 발생 시 적용할 계획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개정: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장기투자지분  
개정사항은 기업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 금융상품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여야 하며 이러한 금융상품에는 실질적으로 기업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의 기대신용손실모델이 그러한 장기투자지분에 적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면서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적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장기투자지분의 장부금액 조정사항인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의 손실이나 순투자에 대한 손상차손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 '법인세처리의 불확실성'  
이 해석서는 법인세 처리에 불확실성이 있을 때 기준서 제1012호의 인식 및 측정 요구사항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다룹니다. 그러나 이 해석서는 기준서 제1012호의 적용범위가 아닌 세금 또는 부담금에 적용되지 않으며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와 관련되는 이자와 벌과금에 관련된 요구사항을 다루지 않습니다. 이 해석서는 다음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 기업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개별적으로 고려할지

- 법인세 처리에 대한 과세당국의 조사에 관한 기업의 가정
- 기업이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 세무기준액,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미사용 세액공제, 세율을 어떻게 산정할지
- 기업이 사실 및 상황의 변화를 어떻게 고려할지

연결기업은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 각각을 개별적으로 고려할지 아니면 하나 이상의 다른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와 함께 고려할지를 판단합니다. 접근법 중 불확실성의 해소를 더 잘 예측하는 접근법을 사용합니다. 이 해석서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유효하며 특정 경과 규정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시행일에 이 해석서를 적용할 것입니다. 연결기업은 여러 국가의 복잡한 세무 환경에서 운영되므로, 해석서는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기업은 해석서를 적시에 적용하기 위한 정보를 얻기 위한 절차의 구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이 개정은 공동약정의 한 당사자가 공동영업과 관련된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다가 해당 공동영업(사업의 정의 충족)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할 경우 해당 거래는 단계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용하여야 하며, 이 때 취득자는 공동영업에 대하여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 전부를 재측정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 이후에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결합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으며, 조기적용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연결기업의 향후 사업결합거래에 적용될 것입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 (개정)

공동영업에 참여는 하지만 공동지배력을 보유하지 않은 공동영업 당사자가 그 공동영업(활동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에서 정의하는 사업에 해당)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은 이러한 경우 그 공동영업에 대해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은 재측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 이후에 공동지배력을 획득하는 거래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으며, 조기적용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이 연결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나 향후 거래에 적용될 것입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이 개정은 배당의 법인세효과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보다는 분배가능한 이익을 창출하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에 보다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따라서기업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과 관련하여 원래 인식하였던 항목에 따라 배당의 법인세효과를 당기손익, 기타 포괄손익 또는 자본으로 인식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처음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 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경우, 가장 이른 비교기간 이후에 인식된 배당의 법인세효과에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합니다. 연결기업의 현행 회계처리는 개정 내용과 차이가 없으므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 '차입원가' (개정)

이 개정은 기업이 적격자산을 후속적으로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준비가 되었을 때, 그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모든 차입금이 일반적인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에 포함되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연결기업은 처음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하는 회계연도 이후에 생기는 차입원가에 적용합니다. 이 개정 내용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처음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

용하되 조기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결기업의 현행 회계처리는 개정 내용과 차이가 없으므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3. 중요한 회계적 판단, 추정 및 가정

연결기업의 경영자는 재무제표 작성시 수익, 비용, 자산 및 부채에 대한 보고금액과 우발부채에 대한 주식공시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 및 가정의 불확실성은 향후 영향을 받을 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연결기업이 노출된 위험 및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공시사항으로 자본관리, 재무위험관리 및 정책, 민감도 분석이 있습니다.

#### 추정 및 가정

다음 회계연도내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을 내포한 보고기간말 현재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주요 원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 및 추정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시점에 입수가 가능한 변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과 미래에 대한 가정은 시장의 변화나 연결기업의 통제에서 벗어난 상황으로 인해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가 발생시 이를 가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비금융자산의 손상

연결기업은 매 보고일에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징후의 존재 여부를 평가합니다. 영업권과 비한정 내용연수의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매년 또는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에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기타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장부금액이 회수가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사용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경영자는 해당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기대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동 미래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적절한 할인율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퇴직급여제도

확정급여퇴직연금제도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통해 결정됩니다.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다양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가정의 설정은 할인율, 미래임금상승율, 사망률 및 미래연금상승률의 결정 등을 포함합니다. 평가방법의 복잡성과 기본 가정 및 장기적인 성격으로 인해 확정급여채무는 이러한 가정들에 따라 민감하게 변동됩니다. 모든 가정은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됩니다.

#### 법인세

연결기업의 영업활동은 전세계 다양한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영업활동으로 창출된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 역시 다양한 국가의 세법 및 과세당국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연결기업의 영업활동으로 창출된 과세소득에 대한 최종 세 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연결기업은 보고기간 말 현재까지의 영업활동의 결과로 미래에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 효과를 추정하여 당기 법인세 및 이연법인세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 실제 법인세 부담액은 인식한 관련 자산, 부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예상한 법인세 효과가 확정된 시점의 당기 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에 영향

을 줄 수 있습니다.

####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있습니다. 연결기업은 보고기간 말 현재 주요한 시장 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상세한 주식사항은 향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될 당사의 연결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별도 재무제표

재 무 상 태 표

제 33 기말 2018년 12월 31일 현재

제 32 기말 2017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다우기술

(단위 : 원)

구 분	제33(당)기말	제32(전)기말
자 산		
유동자산	142,095,348,362	106,132,774,675
현금및현금성자산	17,670,034,807	4,367,093,768
매출채권	8,761,856,543	20,208,935,469
계약자산	806,821,846	-
기타유동금융자산	-	77,377,772,167
유동성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110,352,537,619	-
기타유동자산	1,580,202,643	3,764,395,734
재고자산	788,393,654	414,577,537
매각예정자산	2,135,501,250	-
비유동자산	611,313,923,330	599,521,554,017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3,379,406,420
비유동성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7,684,753,174	-
종속기업투자	196,011,892,640	219,928,766,440
관계기업투자	73,783,759,234	76,751,657,177
매도가능금융자산	-	33,106,190,362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16,135,634,507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20,772,631,250	-
투자부동산	169,620,170,986	172,181,047,424
유형자산	92,021,427,603	76,285,826,438
영업권	22,321,587,132	9,825,863,179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11,542,931,523	6,000,827,684
기타비유동자산	1,419,135,281	2,061,968,893
자 산 총 계	753,409,271,692	705,654,328,692
부 채		
유동부채	71,162,330,216	188,638,895,875
매입채무	2,402,972,636	5,430,611,468
계약부채	15,024,702,638	-
예수부채	5,421,435,957	4,863,880,855
단기차입금	21,900,000,000	149,816,415,954
기타유동금융부채	11,343,184,883	12,379,962,115

기타유동부채	9,077,617,688	10,417,443,079
당기법인세부채	5,992,416,414	5,730,582,404
비유동부채	167,907,458,985	17,162,716,695
장기차입금	149,475,524,728	-
이연법인세부채	14,067,213,218	13,196,513,445
기타비유동금융부채	4,364,721,039	3,966,203,250
부 채 총 계	239,069,789,201	205,801,612,570
자 본		
자본금	22,433,308,500	22,433,308,500
자본잉여금	178,512,717,239	178,512,717,239
자기주식	(10,030,400,392)	(9,153,717,481)
기타포괄손익누계액	(4,688,570,013)	(365,585,529)
이익잉여금	328,112,427,157	308,425,993,393
자 본 총 계	514,339,482,491	499,852,716,122
부채와 자본총계	753,409,271,692	705,654,328,692

포괄손익계산서

제 33(당) 기 2018년 01월 0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 32(전) 기 2017년 01월 0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다우기술

(단위 : 원)

구 분	제33(당)기	제32(전)기
매출액	192,269,486,272	163,602,637,328
매출원가	(145,113,995,263)	(130,842,412,740)
매출총이익	47,155,491,009	32,760,224,588
판매비와 관리비	(13,880,941,731)	(13,390,058,427)
영업이익	33,274,549,278	19,370,166,161
기타수익	4,709,423,129	7,391,939,347
기타비용	(8,101,601,019)	(8,497,112,520)
금융수익	17,949,673,041	13,338,201,626
금융원가	(5,998,884,345)	(4,351,989,525)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영업이익	41,833,160,084	27,251,205,089
계속영업법인세비용	(11,528,296,777)	(6,272,161,342)
계속영업이익	30,304,863,307	20,979,043,747
중단영업이익	3,109,626,810	1,015,277,089
당기순이익	33,414,490,117	21,994,320,836
기타포괄손익	(4,677,140,311)	1,113,298,755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404,846,126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562,312,578)	708,452,62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4,114,827,733)	-
총포괄이익	28,737,349,806	23,107,619,591
주당손익		
기본 및 희석 주당계속영업이익	700	485
기본 및 희석 주당이익	772	508

## 자 본 변 동 표

제 33(당) 기 2018년 01월 0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 32(전) 기 2017년 01월 0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다우기술

(단위 : 원)

과 목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기주식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	합계
2017.1.1(전기초)	22,433,308,500	178,512,717,239	(9,153,717,481)	(770,431,655)	296,539,874,178	487,561,750,781
당기순이익	-	-	-	-	21,994,320,836	21,994,320,836
기타포괄손익: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	404,846,126	-	404,846,126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708,452,629	708,452,629
총포괄이익	-	-	-	404,846,126	22,702,773,465	23,107,619,591
연차배당	-	-	-	-	(10,816,654,250)	(10,816,654,250)
2017.12.31(전기말)	22,433,308,500	178,512,717,239	(9,153,717,481)	(365,585,529)	308,425,993,393	499,852,716,122
2018.1.1(당기초)(이전보고금액)	22,433,308,500	178,512,717,239	(9,153,717,481)	(365,585,529)	308,425,993,393	499,852,716,122
회계정책변경의 효과	-	-	-	(208,156,751)	(185,758,675)	(393,915,426)
2018.1.1(당기초)(재작성금액)	22,433,308,500	178,512,717,239	(9,153,717,481)	(573,742,280)	308,240,234,718	499,458,800,696
당기순이익	-	-	-	-	31,455,935,536	31,455,935,536
기타포괄손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	-	(4,114,827,733)	-	(4,114,827,733)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562,312,578)	(562,312,578)
총포괄이익	-	-	-	(4,114,827,733)	30,893,622,958	26,778,795,225
연차배당	-	-	-	-	(12,979,985,100)	(12,979,985,100)
동일지배 하 사업결합	-	-	(876,682,911)	-	-	(876,682,911)
2018.12.31(당기말)	22,433,308,500	178,512,717,239	(10,030,400,392)	(4,688,570,013)	326,153,872,576	512,380,927,910

현금흐름표

제 33(당) 기 2018년 01월 0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 32(전) 기 2017년 01월 0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다우기술

(단위 : 원)

구 분	제33(당)기	제32(전기)
영업활동 현금흐름		
당기순이익	33,414,490,117	21,994,320,836
비현금항목의 조정		
퇴직급여	2,135,151,696	2,355,466,584
감가상각비	2,465,203,708	2,266,683,054
투자부동산 감가상각비	1,350,134,476	1,350,134,516
무형자산상각비	3,048,053,898	2,015,678,120
무형자산손상차손	327,890,235	616,401,204
대손상각비	429,006,483	63,960,750
기타의대손상각비	5,000,000	160,995,070
외화환산이익	(46,849,535)	(25,723,004)
외화환산손실	38,035,401	66,917,467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	-	(983,672,961)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손실	-	23,073,762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이익	(220,538,773)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실	782,779,992	-
관계기업투자주식처분이익	(62,483,614)	-
관계기업투자주식처분손실	-	1,570,000
매각예정자산처분이익	(3,876,879,535)	-
유형자산처분이익	(1,136,364)	(743,157,534)
유형자산처분손실	8,508,113	6,166,115
투자부동산처분이익	-	(3,793,185,710)
무형자산처분이익	-	(3,029,400)
이자수익	(2,436,331,571)	(1,541,152,798)
이자비용	5,094,412,225	4,022,479,924
배당금수익	(15,199,684,737)	(10,438,349,480)
법인세비용	12,405,371,005	6,558,521,546
금융보증수익	(18,728,055)	-
소 계	6,226,915,048	1,979,777,225
운전자본의 조정		
매출채권	8,043,259,508	4,377,445,606
계약자산	(371,104,790)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3,334,504,322)	242,619,395
기타자산	3,354,912,485	(827,517,619)

재고자산	(451,004,808)	594,573,784
사외적립자산	(3,500,000,000)	(1,800,000,000)
퇴직금의 지급	(43,261,268)	(1,247,342,553)
매입채무	(2,422,650,525)	(2,638,037,814)
계약부채	3,886,789,781	-
예수부채	557,555,102	(3,914,658,444)
기타금융부채	(1,190,769,350)	696,579,607
기타부채	4,156,690,011	5,120,093,417
소 계	8,685,911,824	603,755,379
이자의 수취	2,088,096,743	1,628,637,028
배당금의 수취	15,199,684,737	10,438,349,480
법인세의 납부	(9,653,845,842)	(6,453,662,593)
이자의 지급	(4,322,168,079)	(3,893,671,925)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51,639,084,548	26,297,505,430
투자활동 현금흐름		
기타금융자산의 증가	-	(68,675,802,395)
기타금융자산의 감소	-	101,238,723,319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의 취득	(71,132,466,011)	(1,426,484,420)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의 처분	38,826,151,826	1,610,848,410
종속기업투자의 취득	(2,612,241,600)	(26,305,675,400)
관계기업투자의 취득	(4,602,893,545)	(32,160,902,970)
관계기업투자의 처분	5,497,773,852	912,430,000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	(11,435,582,731)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	16,402,412,157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취득	(10,000,000,00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취득	(3,809,640,26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처분	3,516,791,046	-
투자부동산의 처분	-	16,094,967,943
유형자산의 취득	(15,424,267,475)	(2,342,546,719)
유형자산의 처분	3,077,274	1,282,098,268
무형자산의 취득	(1,317,879,508)	(596,831,284)
무형자산의 처분	-	15,600,000
사업결합으로 인한 현금의 증가	8,056,004,987	-
사업양도로 인한 현금유입	5,964,114,499	-
투자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47,035,474,915)	(5,386,745,822)
재무활동 현금흐름		
차입금의 증가	149,378,680,000	5,000,000,000
차입금의 감소	(128,000,000,000)	(15,000,000,000)
배당금의 지급	(12,979,908,960)	(10,816,586,950)

기타비유동금융부채의 증가	290,103,600	347,414,000
기타비유동금융부채의 감소	(33,750,000)	(687,204,200)
재무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8,655,124,640	(21,156,377,150)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13,258,734,273	(245,617,542)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44,206,766	(32,091,006)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4,367,093,768	4,644,802,316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17,670,034,807	4,367,093,768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제 33(당) 기 2018년 01월 0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 32(전) 기 2017년 01월 0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다우기술

(단위 : 원)

구 분	제33(당)기 (처분예정일 : 2019년3월26일)		제32(전기) (처분확정일 : 2018년3월23일)	
미처분이익잉여금		315,955,080,818		297,566,645,564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283,288,661,954		274,863,872,099	
회계정책변경효과	(185,758,675)		-	
당기순이익	33,414,490,117		21,994,320,836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562,312,578)		708,452,629	
이익잉여금처분액		(16,657,647,545)		(14,277,983,610)
이익준비금	1,514,331,595		1,297,998,510	
배당금				
(주당배당금(액면배당률) : 당 기 : 350원 (70%) 전 기 : 300원 (60%))	15,143,315,950		12,979,985,100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299,297,433,273		283,288,661,954

# 주석

제 33(당) 기 2018년 01월 0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 32(전) 기 2017년 01월 0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다우기술

## 1. 회사의 개요

주식회사 다우기술(이하, "당사")은 1986년 1월 9일에 설립되어 소프트웨어와 시스템관련 솔루션의 개발 및 판매,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 관련 솔루션의 개발 및 판매, 인터넷 관련 서비스, 부동산 분양 및 개발, 임대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제표는 2019년 2월 19일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당사는 1997년 8월 27일에 주식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였으며, 수차의 유·무상증자, 신주인수권 행사 및 합병을 거쳐 당기말 현재 납입자본금은 22,433,309천원이며, 최대주주인 (주)다우데이터가 40.4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2. 중요한 회계정책 및 재무제표 작성기준

###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재무제표는 아래 회계정책에서 별도로 언급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재무제표는 원화로 표시되어 있으며 다른 언급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천원 단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2.2 중요한 회계정책

#### 2.2.1 사업결합 및 영업권

사업결합은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된 이전대가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 금액의 합계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결합에 대해 취득자는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을 공정가치 또는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중의 비지배지분의 비례적 지분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취득관련원가는 발생시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취득일에 존재하는 계약조건, 경제상황, 취득자의 영업정책이나 회계정책 그리고 그 밖의 관련조건에 기초하여 분류하거나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는 피취득자의 주계약에서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의 경우 취득자는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그 결과 발생하는 공정가치와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취득자가 피취득자에게 조건부 대가를 제공한 경우 동 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이전대가에 포함하고 있으며 자산이나 부채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이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재측정하지 않고 정산시 자본내에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조건부 대가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적절한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와 비지배지분 금액 및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의 합계액이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취득한 순자산의 공정가치가 이전대가 등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사는 모든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정확하게 식별하였는지에 대해 재검토하고 취득일에 인식한 금액을 측정하는 데 사용한 절차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재검토 후에도 여전히 이전대가 등의 합계액이 취득한 순자산의 공정가치보다 낮다면 그 차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 영업권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손상검사 목적상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취득일로부터 배분되며 이는 배분대상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피취득자의 다른 자산이나 부채가 할당되어 있는지와 관계없이 이루어집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 내의 영업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되는 영업과 관련된 영업권은 처분손익을 결정할 때 그 영업의 장부금액에 포함하며 현금창출단위 내에 존속하는 부분과 처분되는 부분의 상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배·종속기업 간이나 종속기업 간의 사업결합 또는 사업을 사업결합 전후에 걸쳐 궁극적으로 지배하고 그 지배력이 일시적이지 않은 동일지배하의 사업결합은 지배주주의 관점에서 법률적 실체의 변경만 가져올 뿐 경제적 실체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은 거래로 보아 취득일의 피취득자의 자산과 부채를 최상위지배기업의 재무제표상 계상되어 있는 피취득기업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이전대가와의 차이를 자본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2.2.2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및관계기업의 투자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당사는 종속기업과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원가법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으로부터의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2.2.3 유동성/비유동성 분류

당사는 자산과 부채를 유동/비유동으로 재무상태표에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산은 다음의 경우에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하거나 소비할 의도가 있다.
-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한다.
-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서, 교환이나 부채 상환 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한 제한 기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이 아니다.

그 밖의 모든 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2.2.4 공정가치 측정

당사는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상품을 보고기간말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공정가치 측정은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거래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 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
- 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시장

당사는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는 시장참여자가 경제적으로 최선의 행동을 한다는 가정하에 시장참여자가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가정에 근거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참여자가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그 자산을 최고 최선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최고 최선으로 사용할 다른 시장참여자에게 그 자산을 매도하는 시장참여자의 능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황에 적합하며 관련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대화하고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데 충분한 자료가 이용가능한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에서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시되는 모든 자산과 부채는 공정가치 측정에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구분된다.

- 수준 1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 공정가치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한 공정가치
- 수준 3 : 공정가치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이용한 공정가치

재무제표에 반복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당사는 매 보고기간말 공정가치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에 기초한 분류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서열체계의 수준 간의 이동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공정가치 공시 목적상 당사는 성격과 특성 및 위험에 근거하여 자산과 부채의 분류를 결정하고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 2.2.5 외화환산

당사는 재무제표를 당사의 기능통화인 원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 거래와 잔액

당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기능통화 외의 통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기능통화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환산차이는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외화표시 비화폐성 항목은 최초 거래 발생일의 환율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외화표시 비화폐성 항목은 공정가치 측정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 2.2.6 금융상품: 최초 인식과 후속 측정

금융자산은 거래 당사자 일방에게 금융자산을 발생시키고 동시에 다른 거래 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을 발생시키는 모든 계약입니다.

#### (1) 금융자산

##### 최초 인식과 측정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시점에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그리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최초 인식 시점에 금융자산의 분류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당사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당사는 금융자산을 최초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원가를 가감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결정된 거래가격으로 측정합니다.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SPPI)되어야 합니다. 이 평가는 SPPI 테스트라고 하며, 개별 상품 수준에서 수행됩니다.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당사의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해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방법과 관련됩니다.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의 원천이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인지, 매도인지 또는 둘 다 인지를 결정합니다.

시장의 합의나 규제에 의해 설정된 기간 프레임 내에서 금융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요구되는 금융자산의 매입 또는 매도(정형화된 거래)는 거래일에 인식됩니다. 즉, 당사가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기로 약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 후속측정

후속 측정을 위해 금융자산은 아래 네 가지의 범주로 분류됩니다.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 누적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 제거시 누적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지분상품)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이 범주는 당사와 가장 관련이 높습니다. 당사는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EIR)법을 사용하여 측정되며, 손상을 인식합니다. 자산의 제거, 변경 또는 손상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당사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으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에서,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그리고 손상 또는 환입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되어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금융자산의 제거 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공정가치 누적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됩니다.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지분상품)

최초 인식 시점에,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서의 지분의 정의를 충족하고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지분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되지 않습니다. 배당은 연결기업이 금융자산의 원가중 일부를 회수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되며, 이를 제외하고는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을 때 손익계산서상 기타수익으로 인식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은 손상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비상장지분상품에 대해서도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 최초 인식 시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자산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되는 금융자산을 포함합니다. 단기간 내에 매도하거나 재구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파생상품은 효과적인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지 않은 금융자산은 사업모형에 관계없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 및 측정됩니다. 상기 문단에서 서술된 것과 같이 채무상품이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회계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킬 수 exist한다면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표시되며, 공정가치의 순변동은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이 범주는 파생상품과 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하지 않은 상장 지분 상품을 포함합니다. 상장 지분 상품에 대한 배당은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복합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경제적인 특성과 위험이 주계약에 밀접하게 관련되지 않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인 별도의 상품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며, 복합계약이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다면 주계약으로부터 분리하여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금흐름을 유의적으로 변경시키는 계약 조건의 변경이 있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만 재평가가 발생합니다.

주계약이 금융자산인 복합계약에서 내재파생상품은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지 않습니다. 주계약인 금융자산과 내재파생상품은 상품 전체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 제거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의 일부 또는 비슷한 금융자산의 집합의 일부)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제거됩니다.

-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가 소멸되거나
- 당사가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양도하거나 양도(pass-through) 계약에 따라 수취한 현금흐름 전체를 중요한 지체 없이 제3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에 당사는 금융자산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거나 금융자산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보유하지도 않으나 자산에 대한 통제를 이전

당사가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이전하거나 양도(pass-through) 계약을 체결할 때, 자산을 소유함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유지하는지를 평가합니다. 당사가 금융자산의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이전하지도 않았다면, 해당 금융자산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그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합니다. 이 경우에, 당사는 관련된 부채를 인식합니다. 양도된 자산과 관련된 부채는 당사가 보유한 권리와 의무를 반영하여 측정합니다.

보증을 제공하는 형태인 지속적 관여는, 양도된 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 중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 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을 제외한 모든 채무상품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ECL)에 대한 충당금을 인식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계약상 수취하기로 한 현금흐름과 당사가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현금흐름의 차이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예상되는 현금흐름은 보유한 담보를 처분하거나 계약의 필수 조건인 그 밖의 신용 보강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포함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두 개의 stage로 인식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없는 신용 익스포저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은 향후 12개월 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채무불이행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반영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는 신용 익스포저에 대하여, 손실충당금은 채무불이행 사건이 발생하는 시기와 무관하게 익스포저의 남은 존속기간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도록 요구됩니다.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에 대하여, 당사는 기대신용손실 계산에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신용위험의 변동을 추적하지 않는 대신에, 각 결산일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당사는 특정 채무자에 대한 미래전망정보와 경제적 환경을 반영하여 조정된 과거 신용손실 경험에 근거하여 충당금 설정률표를 설정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에 대하여, 당사는 낮은 신용위험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매 결산일에, 당사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사용하여 채무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고려되는지를 평가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위해서, 당사는 채무상품의 내부 신용등급을 재평가합니다.

당사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이 최상위 투자등급에 해당하는 상장 채권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낮은 신용 위험 투자자산으로 평가됩니다. 당사의 정책은 이러한 상품을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 이후에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다면 손실충당금은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근거하여 산출됩니다. 당사는 채무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결정하고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신용평가기관의 등급을 사용합니다.

당사는 계약상 지급이 유의적으로 연체되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 당사는 내부 또는 외부 정보가 당사에 의한 모든 신용보강을 고려하기 전에는 당사가 계약상의 원금 전체를 수취하지 못할 것을 나타내는 경우에 금융자산에 채무불이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계약상 현금흐름을 회수하는 데에 합리적인 기대가 없을 때 제거됩니다.

#### (2) 금융부채

##### 최초인식 및 측정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대출과 차입, 미지급금 또는 효과적인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으로 적절하게 분류됩니다.

모든 금융부채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대여금, 차입금 및 미지급금의 경우에는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를 차감합니다.

#### 후속측정

금융부채의 측정은 아래에서 언급된 분류에 따릅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와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부채를 포함합니다.

금융부채가 단기간 내에 재매입되는 경우에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이 범주는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정의된 위험회피관계에 있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을 포함합니다. 또한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은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단기매매항목인 금융부채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최초 인식 시점에만 지정됩니다. 당사는 어떤 금융부채도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 대여금 및 차입금

이 범주는 당사와 관련이 높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에, 이자부 대여금과 차입금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부채가 제거되거나 유효이자율 상각 절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상각후원가는 유효이자율의 필수적인 부분인 수수료나 원가에 대한 할인이나 할증액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 제거

금융부채는 지급 의무의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 제거됩니다. 기존 금융부채가 대여자는 동일하지만 조건이 실질적으로 다른 금융부채에 의해 교환되거나, 기존 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이러한 교환이나 변경은 최초의 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부채를 인식하게 합니다. 각 장부금액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 (3)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상계 권리를 현재 가지고 있거나,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의도가 있는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상계하여 순액으로 표시됩니다.

#### 2.2.7 현금및현금성자산

재무상태표상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통예금과 소액현금 및 취득당시 만기가 3개월이내인 단기성 예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금흐름표상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이러한 현금및현금성자산에서 당좌차월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 2.2.8 재고자산

당사는 재고자산을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고자산별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데 발생한 기타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개별법(상품) 및 이동평균법(제품 및 원재료)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 2.2.9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당사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나 분배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과 처분자산집단은 매각부대원가 차감 후 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매각부대원가는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처분에 직접 귀속되는 증분원가(금융원가와 법인세비용 제외)입니다.

매각예정으로의 분류 조건은 매각이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에서 즉시 매각 가능하고 그 매각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충족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각을 완료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조치들은 그 매각이 유의적으로 변경되거나 철회될 가능성이 낮음을 보여야 하며, 매각예정으로 분류한 시점에서 1년 이내에 매각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매각 예정으로 분류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은 감가상각 또는 상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 2.2.10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은 관련 거래원가를 가산한 취득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발생시점에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한 대체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상적인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투자부동산을 처분(즉, 취득자가 해당 자산을 통제하게 되는 날)하거나 사용을 통하여 더 이상 미래경제적효익을 얻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재무제표에서 제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순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는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제거로 인해 발생하는 손익에 포함될 대가(금액)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거래가격 산정에 관한 요구사항에 따라 산정됩니다.

또한, 해당 자산의 사용목적이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투자부동산에서 다른 계정으로 대체하거나 다른 계정에서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분류에 따라서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인식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는 투자부동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추정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건물은 50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 2.2.11 유형자산

건설중인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유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가에는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한 대체원가 및 장기건설 프로젝트의 차입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주요 부분이 주기적으로 교체될 필요가 있는 경우 당사는 그 부분을 개별

자산으로 인식하고 해당 내용연수동안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검사원가와 같이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모든 수선 및 유지비용은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부지를 복원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이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지출의 현재가치를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추정한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건물은 50년, 기계장치 및 기타 유형자산은 3 ~ 5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은 처분하는 때(즉, 취득자가 해당 자산을 통제하게 되는 날)또는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 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경우 제거합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며,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매 회계연도말에 유형자산의 잔존가치,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 2.2.12 리스

당사는 약정일에 약정이 리스이거나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약정의 실질에 근거하여 i) 특정자산을 사용해야만 약정을 이행할 수 있는지 ii) 약정에 따라 그 자산의 사용권이 이전되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리스이용자로서의 회계처리

리스는 리스약정일을 기준으로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당사에 이전되는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약정일에 측정된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을 리스기간개시일에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로 각각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기 지급되는 최소리스료는 금융원가와 리스부채의 상환액으로 구분되며 금융원가는 매기 부채의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자율이 산출되도록 리스기간의 각 회계기간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리스자산은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리스기간 종료시점까지 리스자산의 소유권을 획득할 것이 확실하지 않을 경우 당사는 리스자산을 내용연수와 리스기간 중 짧은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는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로, 운용리스에서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리스제공자로서의 회계처리

당사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의 협상 및 계약단계에서 발생한 리스개설직접원가는 운용리스자산의 장부금액에 추가하고 리스료수익에 대응하여 리스기간 동안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정리스료는 가득된 기간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2.2.13 차입원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하는 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시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차입원가는 이자금의 차입과 관련되어 발생한 이자와 기타 원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2.2.14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부수되는 조건의 이행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산 취득에 사용될 목적으로 수령한 상환의무가 없는 정부보조금 중 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경우에는 이를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고 있습니다.

#### 2.2.15 무형자산

당사는 개별적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매수시점의 공정가치로 계상하며 최초 취득 이후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직접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발비를 제외한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은 발생시점에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과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 자산으로 구분되는 바,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해당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하고 손상징후가 파악되는 경우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은 매 회계연도말에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예상 사용기간의 변경이나 경제적효익의 소비형태 변화 등으로 인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상각비는 해당 무형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상각비는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추정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5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되, 매년 개별적으로 또는 현금창출단위에 포함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해당 무형자산에 대하여 비한정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전진적인 방법으로 유한한 내용연수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처분하는 때(즉, 취득자가 해당 자산을 통제하게 되는 날) 또는 사용이나 처분으로부터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합니다. 당사는 무형자산 제거시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인한 손익은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연구개발비

당사는 연구에 대한 지출을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프로젝트와 관련된 개발비의 경우, i)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고, ii)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의도와 능력이 있으며, iii) 이를 위한 충분한 자원이 확보되어 있고, iv) 무형자산이 어떻게 미래 경제적효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를 제시할 수 있으며, v)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산으로 인식한 개발비는 원가모형을 적용하여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직접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으며, 개발이 완료되어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경제적효익의 예상 지속기간에 걸쳐 상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산으로 인식한 개발비에 대하여 개

발기간동안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2.2.16 비금융자산의 손상

### 비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존재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징후가 존재하는 경우 또는 매년 자산에 대한 손상검사가 요구되는 경우, 당사는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며, 개별자산 별로 결정하나 해당 개별자산의 현금유입이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의 현금유입과 거의 독립적으로 창출되지 않는 경우, 해당 개별자산이 속한 현금창출 단위별로 결정됩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은 손상된 것으로 보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게 됩니다.

사용가치는 해당 자산의 기대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를 화폐의 시간가치와 해당 자산의 위험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순공정가치는 최근거래가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거래가 식별되지 않는 경우 적절한 평가모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에는 평가배수, 상장주식의 시가 또는 기타 공정가치 지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손상된 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자산으로서 이전에 인식한 재평가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 재평가금액을 한도로 재평가잉여금과 상계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하여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과거에 인식한 자산의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감소하였다는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그러한 징후가 있는 경우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인식한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의 손상차손은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의 자산의 장부금액의 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장부금액을 회수 가능액으로 증가시키고 이러한 손상차손환입은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영업권

당사는 매년 및 손상징후가 발생하였을 때 영업권의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한 손상검사는 해당 영업권과 관련된 각각의 현금창출 단위 또는 현금창출단위 집단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영업권에 대하여 인식한 손상차손은 이후에 환입하지 않습니다.

### 무형자산

당사는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에 대하여 매년 및 손상징후가 발생하였을 때 개별 자산별 또는 현금창출 단위별로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2.2.17 충당부채

당사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의무의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

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당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와 관련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되는 비용은 제3자의 변제와 관련하여 인식한 금액과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 2.2.18 법인세

### 당기법인세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종료일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 (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에 직접 반영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 법인세는 자본에 반영되며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관련 세법 규정의 해석과 관련해서 법인세 환급액에 대한 회수가능성을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 이연법인세

당사는 자산 및 부채의 재무보고 목적상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하는 경우
- 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로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하는 경우
-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지분과 관련한 가산할 일시적차이로서 동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또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감할 일시적차이, 미사용 세액공제와 세무상 결손금이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로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이연법인세자산이 발생하는 경우
-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지분과 관련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서 동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동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높지 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감액된 금액은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범위내에서 다시 환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 보고기간종료일마다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미래 과세소득에 의해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아진 범위까지 과거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종료일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항목은 해당 거래에 따라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거나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한 경우 혹은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유의적인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의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 판매세

수익, 비용 및 자산은 관련 판매세를 차감한 순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산또는 용역의 구매와 관련한 판매세가 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자산의 취득원가의 일부 또는 비용항목의 일부로 인식하고 관련 채권과 채무는 판매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 또는 과세당국에 납부해야 할 판매세의 순액은 재무상태표의 채권 또는 채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2.2.19 종업원급여

당사는 확정급여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바, 관련 기금에 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확정급여제도의 급여원가는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결정됩니다. 보험수리적손익,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재측정요소는 발생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과거근무원가는 다음 중 이른 날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할 때
- 관련되는 구조조정원가나 해고급여를 인식할 때

순이자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근무원가와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를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의 항목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2.2.20 자기주식

당사는 자기주식을 자본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자기주식의 취득, 매각, 발행 또는 취소에 따른 손익은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지 않으며, 장부금액과 처분대가의 차이는 기타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 2.2.21 현금배당

당사는 배당을 지급하기 위해 분배가 승인되고 더 이상 기업에게 재량이 없는 시점에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주에 대한 분배는 주주에 의한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대응되는 금액은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 2.2.22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당사는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 관련 솔루션의 개발 및 판매와 인터넷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당사는 재화나 용역의 통제가 고객에 이전되었을 때, 해당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을 권리에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한 대가를 반영하여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전에 정해진 각 재화나 용역을 통제하므로 본인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 소프트웨어 등의 판매

소프트웨어 등의 판매 수익은 자산에 대한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는 시점인 소프트웨어 등의 인도 및 사용 가능한 시점에 인식됩니다. 일반적인 채권 회수기간은 인도 후 30일에서 60일입니다. 당사는 계약 내의 다른 약속이 거래대가의 일부분으로 배부되어야 하는 별도의 수행의무인지 고려합니다. 소프트웨어 등 판매 거래 가격을 산정할 때, 당사는 변동대가 및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고려합니다.

#### (1) 변동대가

계약이 변동대가를 포함한 경우에 당사는 고객에 약속한 재화를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금액을 추정합니다. 변동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 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환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만 변동대가를 계약의 개시 시점에 추정하고 거래가격에 포함합니다.

#### (2) 유의적인 금융요소

일반적으로 당사는 고객으로부터 단기선수금을 수령합니다. 기준서 제1115호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당사는 계약을 개시할 때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시점과 고객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 간의 기간이 1년 이내일 것이라고 예상된다면 약속한 대가(금액)에 유의적인 금융요소의 영향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 고객충성제도

당사는 고객충성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은 이 제도에 따라서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는 포인트를 적립 받습니다. 고객충성제도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은 고객에게 중요한 권리이므로 별도의 수행의무에 해당됩니다. 포인트는 판매가격에 고객별 등급을 고려한 지급 비율에 기초하여 배부되거나, 이벤트 진행에 따라 지급됩니다. 지급된 포인트는 고객충성제도에 따라 수익에서 차감되며, 사용되거나 소멸될 때까지 계약부채로 인식됩니다. 포인트 가격을 유료 판매가격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고객충성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매 분기 별로 포인트 사용 및 잔액 현황에 따라 계약부채를 조정하며, 조정된 계약부채 금액은 손익에 반영됩니다.

####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보수 용역

당사는 고객 맞춤형 한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구축된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합니다. 당사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구축된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 용역에 대한 수익을 용역 진행률에 따라 기간에 걸쳐 인식합니다. 고객은 당사가 수행하는 용역에 대한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하기 때문입니다.

## 계약 잔액

### (1) 계약자산

계약자산은 고객에게 이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그 대가를 받을 권리입니다. 고객이 대가를 지급하기 전이나 지급기일 전에 당사가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경우 그 대가를 받을 기업의 권리로 그 권리에 시간의 경과 외의 조건이 있는 자산은 계약자산입니다.

### (2) 매출채권

수취채권은 무조건적인 당사의 권리를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시간만 경과하면 대가를 지급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자산 관련 회계정책은 주석 2.2.6 부분을 참조 합니다.

### (3) 계약부채

계약부채는 당사가 고객에게서 이미 받은 대가(또는 지급기일이 된 대가)에 상응하여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야 하는 기업의 의무입니다. 만약 당사가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기 전에 고객이 대가를 지불한다면, 지급이 되었거나 지급기일 중이른 시점에 계약부채를 인식합니다. 계약부채는 당사가 계약에 따라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 2.2.23 영업부문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에 따라 영업부문과 관련된 공시사항을 재무제표에 공시하고 있으며, 동 재무제표에는 별도로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 2.3 제·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와 제1109호를 최초 적용하였습니다. 제정된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한 변경의 성격과 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몇몇의 다른 개정사항과 해석서가 2018년에 최초로 적용되지만, 당사의 재무제표에 유의적인 영향이 없습니다. 당사는 공표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기준서, 해석서, 개정사항을 조기 적용한 바 없습니다.

### 2.3.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는 기업회계기준서 제 1011호 '건설계약', 기업회계기준서 제 1018호 '수익' 및 관련 해석서를 대체하며, 제한된 예외사항들과 함께 고객과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회계처리를 위해 5단계법을 확립하였으며, 재화나 용역의 이전의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를 반영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는 기업이 고객과의 계약에 5단계법을 적용할 때 관련된 모든 사실과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들인 원가와 계약을 이행할 때 드는 원가에 대한 회계처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보다 확대된 공시사항들을 요구합니다.

당사는 2018년 1월 1일을 최초적용일로 누적효과 일괄조정법을 사용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도입하였습니다. 누적효과 일괄조정법에서는 새로운 기준서를 최초적용일 현재의 모든 계약에 대해 혹은 최초적용일 현재 종료되지 않은 계약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2018년 1월 1일의 모든 계약에 새로운 기준서를 적용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최초 적용으로 인한 누적효과는 최초 적용일에 이익잉여금의 기초잔액에서 조정됩니다. 따라서 비교정보는 재작성되지 않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제1018호 그리고 관련 해석서에 따라 보고됩니다.

동 기준서의 도입으로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주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수행의무의 식별

당사는 소프트웨어등의 판매를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일부 판매계약에 유지보수 업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서는 하나의 계약에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여러 약속이 포함되어 있고, 그 재화나 용역이 구별된다면 각각의 약속은 별도의 수행의무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하며, 거래가격은 일반적으로 계약에서 약속한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의 상대적인 개별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배분해야 합니다.

#### 나.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각각의 수행의무를 한 시점에 이행하는지,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지에 따라 수익인식 시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행의무를 일정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지는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① 고객이 기업이 업무를 수행하는 대로 효익을 얻고 동시에 소비한다. ② 기업이 만드는 대로 고객이 그 자산을 통제한다. ③ 기업이 업무를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자체에는 대체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업무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가능한 지급청구권이 있다.

기업의 대부분의 계약은 계약기간 동안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할의무가 있으며 당사가 만들거나 가치를 높이는 대로 그 자산을 고객이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수행의무에 배분된 거래가격을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또한 진행률을 측정하는 목적에 따라,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수행 정도를 나타내지 못하는 투입물의 영향은 투입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당사는 제품판매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유지보수업무를 별도의 구분되는 수행의무로 식별하였으며, 수행의무는 약속된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에 걸쳐 이행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준서 제1115호 최초 적용에 따라 당사의 기초 이익잉여금 394백만원 감소 및 계약부채 3,255백만원 증가하였고 외상매출금 435백만원은 계약자산으로 선수금 2,142백만원 및 선수수익 3,361백만원은 계약부채로 재분류 되었습니다.

기준서 제1115호 적용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기간과 그 시점에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 항목은 계약자산 및 계약부채 재분류 각각 807백만원 증가 및 15,025백만원 증가 이외에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 2.3.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금융상품 회계의 세가지 측면, 즉 분류와 측정, 손상, 위험회피회계 모두를 통합하여 기업회계기준

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대체합니다

당사는 2018년 1월 1일의 최초 적용일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전진적으로 적용하였습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라 당기 표시되는 비교표시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으로 인한 차이는 이익잉여금 및 기타자본 구성요소에 반영되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도입의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상품의 분류와 측정

금융상품의 분류와 측정에 대한 정책 변경 관련 이익잉여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조정 내역	주석	금액
기초 이익잉여금 - 변경 전		308,425,993
매도가능증권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재분류	①	(172,738)
매도가능증권에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재분류	②	380,895
기준서 제1109호 도입으로 인한 총 잉여금 조정		208,157
기초 이익잉여금 - 변경 후		308,634,150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최초적용일인 2018년 1월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에 적용되는 사업모형을 평가하고 분류 변경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재분류로 인한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당기초 금융자산	주석	당기손익-공정가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전기는 매도가능금융자산)	상각후원가	금융자산 계
기초 장부금액-기준서 제1039호(주1)		-	33,106,190	-	33,106,190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및 상각후원가로 재분류	①	6,697,876	(7,197,876)	500,000	-
기초 장부금액-기준서 제1109호(주1)		6,697,876	25,908,314	500,000	33,106,190

(주1) 2018년 1월 1일의 기초 장부금액은 매도가능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표시하고 만기보유금융자산과 대여금및수취채권을 상각후원가로 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재분류는 측정 범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상세 내역은 아래 (1 - 4) 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의 분류 변경이 당사의 자본에 미친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주석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변동	이익잉여금변동
-----	----	--------------	---------

기초 장부금액-기준서 제1039호		(365,586)	308,425,993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재분류	①	172,738	(172,738)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으로 재분류	②	(380,895)	380,895
합 계		(208,157)	208,157
기초 장부금액-기준서 제1109호		(573,742)	308,634,150

①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재분류  
 당기초 현재 지분증권 6,697,876천원이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재분류되었습니다. 동 지분증권은 투자 목적 지분상품에 해당하며, 동 지분증권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을 나타내지 않아 상각후원가로 분류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당기 초 현재 관련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72,738천원은 이익잉여금으로 재분류되었습니다.

② 매도가능증권에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재분류  
 당기초 현재 매도가능지분증권 손상누계액 380,895천원이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재분류되었습니다. 동 기준서에서는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의 경우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분류하는 선택을 할 경우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측정하며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이전되지 않습니다.

기준서 제1109호의 도입으로 인한 금융상품의 재분류  
 최초적용일인 2018년 1월 1일 현재 기준서 제1109호의 도입으로 인한 금융자산의 재분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측정 범주		장부금액	
	기준서 제1039호	기준서 제1109호	기준서 제1039호	기준서 제1109호
현금및현금성자산	대여금및수취채권	상각후원가	4,367,094	4,367,094
매출채권	대여금및수취채권	상각후원가	20,208,935	20,208,935
기타금융자산	대여금및수취채권	상각후원가	80,757,179	80,757,179
지분 및 채무상품	매도가능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	6,697,876
	매도가능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33,106,190	25,908,314
	매도가능금융자산	상각후원가	-	500,000
금융자산 계			138,439,398	138,439,398

(2) 금융자산의 손상

당사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의 새로운 기대신용손실 모형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상품
-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채무상품

상기 '(1) 금융상품의 분류 및 측정'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당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의 도입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 상각후원가 측정 채무상품에 대하여 Stage1으로 분류되는 채무상품은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Stage2와 3으로 분류되는 채무상품은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사용하였습니다.

### 2.3.3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2호 '외화 거래와 선지급·선수취 대가'(제정)

해석서는 대가를 외화로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발생한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제거하면서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를 최초 인식할 때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거래일은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날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선지급이나 선수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대가의 선지급이나 선수취로 인한 거래일을 각각 결정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2.3.4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개정) - 투자부동산 계정대체

투자부동산의 개발 또는 건설과 관련한 계정대체 시점을 명확히 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투자부동산으로(에서) 용도 변경과 투자부동산 정의를 충족하게 되거나 중지되는 시점의 용도 변경에 대해 기술합니다. 경영진의 의도 변경만으로는 용도 변경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2.3.5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개정) - 주식기준보상거래의 분류와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개정은 가득조건이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의 측정에 미치는 영향, 세금 원천징수의무로 인한 순결제특성이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 현금결제형에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분류를 바꾸는 조건변경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전진적으로 적용되며, 모든 개정사항을 적용하는 때에는 소급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현금결제형 주식기준 보상의 회계정책은 개정사항의 분류 접근법과 일치합니다. 추가로, 당사는 세금 원천징수의무로 인한 순결제특성이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가 없으며, 주식기준보상거래에 조건 변경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2.3.6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개정) - 개별기준 선택

개정 기준서는 다음 사항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이와 유사한 기업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최초인식할 때 각각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선택하여 그 투자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투자기업이 아닌 기업이 투자기업인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그 기업이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투자기업인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이 보유한 종속기업의 지분에 대하여 투자기업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적용한 공정가치 측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은 (1) 투자기업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을 최초로 인식하는 시점, (2)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투자기업이 되는 시점, (3) 투자기업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최초로 지배기업이 되는 시점 중 가장 나중의 시점에 각각의 투자기업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해 개별적으로 합니다. 이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2.3.7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 최초채택 기업의 단기면제 규정 삭제

기준서 제1101호 문단E3~E7는 최초채택기업의 단기 면제 규정으로, 의도한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삭제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2.4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회계기준

당사의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아 당사가 채택하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기준서 및 해석서의 제·개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4호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 2015호 '운용리스: 인센티브',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7호 '법적 형식상의 리스를포함하는 거래의 실질에 대한 평가'을 대체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는 리스의 인식, 측정, 표시, 공시 원칙을 제시하였으며, 리스이용자로 하여금 모든 리스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에서의 금융리스 회계처리와 유사한 단일 모델로 회계처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동 기준서는 리스이용자에 대해 소액자산 리스(예: 개인 컴퓨터), 단기리스(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의 두 가지 인식 면제 규정을 포함합니다. 리스개시일에 리스이용자는 리스료 지급에 대한 부채(리스부채)를 인식하여야 하며, 기초자산에 대한 리스기간동안의 사용권을 나타내는 자산(사용권 자산)을 인식할 것입니다. 리스이용자는 리스부채의 이자비용과 사용권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개별적으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또한 리스이용자는 특정 사건(즉, 리스기간의 변동, 리스료를 산정할 때 사용한 지수나 요율의 변동으로 생기는 미래 리스료의 변동)이 발생하면 리스부채를 재측정해야 합니다. 리스이용자는 일반적으로 사용권 자산을 조정함으로써 리스부채의 재측정 금액을 인식할 것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서의 리스제공자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의 현행 회계처리와 비교하여 실질적으로 변동되지 않았습니다. 리스제공자는 모든 리스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와 동일한 분류 원칙을 사용하여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로 구분할 것입니다. 동 기준서는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에게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보다 광범위한 공시를 요구합니다.

당사는 각 보고기간에 대해 소급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채택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 1017호와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4호에 따라 리스로 식별된 계약에 대해 이 기준서를 적용할 것입니다.

당사는 최초적용일 현재 12개월 이내에 리스 기간이 종료되는 리스계약과 기초자산의 가치가 소액인 리스계약에 대해서는 기준서에 따라 면제규정을 적용하기로 선택할 것입니다. 당사는 소액리스로 간주되는 사무용 기기(예를 들어,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 중에 있으며, 정해진 시행일에 제정 기준서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개정) - 부의 보상을 수반하는 중도상환특성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고(SPPI 요건)분류에 적절한 사업모형에서 보유되는 채무상품은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개정은 계약의 조기 청산을 발생

시키는 사건이나 상황과 무관하고, 당사자가 계약의 조기 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하거나 받는 지와 관계없이 SPPI 조건을 충족하는 금융자산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소급하여 적용되고 2019년 1월 1일부터 유효하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이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상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개정) - 부의 보상을 수반하는 중도상환특성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고(SPPI 요건)분류에 적절한 사업모형에서 보유되는 채무상품은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개정은 계약의 조기 청산을 발생시키는 사건이나 상황과 무관하고, 당사자가 계약의 조기 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하거나 받는 지와 관계없이 SPPI 조건을 충족하는 금융자산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소급하여 적용되고 2019년 1월 1일부터 유효하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이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상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채무제표' 및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개정) - 투자자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간의 자산 매각 또는 출자  
이 개정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매각되거나 출자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 상실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와 기업회계기준서 1028호 간의 상충을 해결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동 기준서에서는 투자자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간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에서 정의된 사업에 해당하는 자산의 매각이나 출자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전액 인식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의 매각이나 출자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투자자의 지분과 무관한 손익까지만 인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서의 적용은 무기한 연기되었으나 조기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진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당사는 동 개정사항의 효력이 발생 시 적용할 계획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개정: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장기투자지분  
개정사항은 기업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 금융상품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여야 하며 이러한 금융상품에는 실질적으로 기업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의 기대신용손실모델이 그러한 장기투자지분에 적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면서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적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장기투자지분의 장부금액 조정사항인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의 손실이나 순투자에 대한 손상차손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 '법인세처리의 불확실성'  
이 해석서는 법인세 처리에 불확실성이 있을 때 기준서 제1012호의 인식 및 측정 요구사항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다룹니다. 그러나 이 해석서는 기준서 제1012호의 적용범위가 아닌 세금 또는부담금에 적용되지 않으며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와 관련된 이자와 벌과금에 관련된 요구사항을 다루지 않습니다. 이 해석서는 다음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 기업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개별적으로 고려할지
- 법인세 처리에 대한 과세당국의 조사에 관한 기업의 가정
- 기업이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 세무기준액,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미사용 세액공제, 세율

## 을 어떻게 산정할지

### - 기업이 사실 및 상황의 변화를 어떻게 고려할지

당사는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 각각을 개별적으로 고려할지 아니면 하나 이상의 다른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와 함께 고려할지를 판단합니다. 접근법 중 불확실성의 해소를 더 잘 예측하는 접근법을 사용합니다. 이 해석서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유효하며 특정 경과 규정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는 시행일에 이 해석서를 적용할 것입니다. 당사는 여러 국가의 복잡한 세무 환경에서 운영되므로, 해석서는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기업은 해석서를 적시에 적용하기 위한 정보를 얻기 위한 절차의 구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2015 - 2017 연차개선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이 개정은 공동약정의 한 당사자가 공동영업과 관련된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다가 해당 공동영업(사업의 정의 충족)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할 경우 해당 거래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용하여야 하며, 이 때 취득자는 공동영업에 대하여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 전부를 재측정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 이후에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결합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으며, 조기적용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당사의 향후 사업결합거래에 적용될 것입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 (개정)

공동영업에 참여는 하지만 공동지배력을 보유하지 않은 공동영업 당사자가 그 공동영업(활동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에서 정의하는 사업에 해당)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은 이러한 경우 그 공동영업에 대해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은 재측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 이후에 공동지배력을 획득하는 거래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으며, 조기적용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이 당사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나 향후 거래에 적용될 것입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이 개정은 배당의 법인세효과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보다는 분배가능한 이익을 창출하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에 보다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과 관련하여 원래 인식하였던 항목에 따라 배당의 법인세효과를 당기손익, 기타 포괄손익 또는 자본으로 인식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처음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 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경우, 가장 이른 비교기간 이후에 인식된 배당의 법인세효과에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합니다. 기업의 현행 회계처리는 개정 내용과 차이가 없으므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 '차입원가' (개정)

이 개정은 기업이 적격자산을 후속적으로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준비가 되었을 때, 그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모든 차입금이 일반적인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에 포함되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당사는 처음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하는 회계연도 이후에 생기는 차입원가에 적용합니다. 이 개정 내용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처음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현행 회계처리는 개정 내용과 차이가 없으므로, 재무제표

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당사의 경영자는 재무제표 작성시 수익, 비용, 자산 및 부채에 대한 보고금액과 우발부채에 대한 주식공시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 및 가정의 불확실성은 향후 영향을 받을 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추정 및 가정

다음 회계연도내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위험을 내포한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주요 원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 및 추정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시점에 입수가 가능한 변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과 미래에 대한 가정은 시장의 변화나 당사의 통제에서 벗어난 상황으로 인해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가 발생시 이를 가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보고기간 말 현재 주요한 시장 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비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매 보고일에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징후의 존재 여부를 평가합니다. 영업권과 비한정 내용연수의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매년 또는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에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기타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사용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경영자는 해당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기대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동 미래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적절한 할인율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 퇴직급여제도

확정급여퇴직제도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통해 결정됩니다.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다양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가정의 설정은 할인율, 미래임금상승율, 사망률 및 미래연금상승률의 결정 등을 포함합니다. 평가방법의 복잡성과 기본 가정 및 장기적인 성격으로 인해 확정급여채무는 이러한 가정들에 따라 민감하게 변동됩니다. 모든 가정은 매 보고기간종료일마다 검토됩니다.

#### 법인세

당사는 영업활동으로 창출된 과세소득에 대한 최종 세 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보고기간 말 현재까지의 영업활동의 결과로 미래에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 효과를 추정하여 당기 법인세 및 이연법인세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 실제 법인세 부담액은 인식한 관련 자산, 부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예상한 법인세 효과가 확정된 시점의 당기 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환류세제

당사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따라 2018 년부터 3 년간 당기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증가 및 배당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동 기간의 법인세를 측정할 때 환류세제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고 있는 바, 당사가 향후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및 배당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향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될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없음.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정관의 변경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p><b>제 2조 (목 적)</b>  당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p> <p>1) ~ 28) (생 략)</p> <p>29) 16) ~ 27)호에 부대되는 사업 및 투자(사업서비스업, 영화방송 및 공연산업, 보험대리 및 중개업 등을 포함한 금융업 및 금융관련 서비스업 등 제반 사업포함)</p> <p>30) 네트워크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구축업</p> <p>31) 멀티미디어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구축업</p> <p>32) 통신장비, 통신기기 및 부품 도·소매업</p> <p>33) 전자복권판매업</p> <p>34) 통신판매업</p> <p>35) 상품권 발행, 유통, 판매, 판매대행업</p> <p>36) 보안시스템 서비스업</p> <p>37)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및 기타 영상물 제작 및 배급업,수입업</p> <p>38) 영화, 비디오물 및 기타 영상물 상영업</p> <p>39) 영화, 방송콘텐츠 및 기타 영상물 공급업</p> <p>40) 영화, 비디오물 및 기타 영상물 관련 서비스업</p> <p>41) 직불전자지급 수단 발행 및 관리업</p> <p>42) 온라인 및 모바일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p> <p>43)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p> <p>44)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p> <p>45) 도메인등록 대행업</p> <p>46) 부가통신 대리점업</p> <p>47)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및 기타 영상물 제작투자, 배급대행업</p> <p>48) 드라마 제작 및 제작 투자업</p> <p>49) 영화상영 및 영화관운영업</p> <p>50) 영화관에 부속하는 각종 위락시설, 음식점, 매점등의 영업</p> <p>51) 문구(펜시)제조 및 출판, 인쇄업</p> <p>52) 캐릭터 개발, 판매 및 중개업</p> <p>53) 음반제작 및 유통업</p> <p>54) 구매대행 및 공동구매업</p> <p>55) 무역업 및 무역대리업(의류,생활용품,전자제품,공산품)</p> <p>56) 창고 및 물류업</p> <p>57) 생활용품, 미용기기, 화장품 도소매</p> <p>58) 일반식품 도소매</p> <p>59) 상품종합 도매업, 중개업</p> <p>60) 육류 도매업</p>	<p><b>제 2조 (목 적)</b>  당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p> <p>1) ~ 28) &lt;현행과 동일&gt;</p> <p>&lt;삭 제&gt;</p> <p>29) 네트워크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구축업</p> <p>30) 멀티미디어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구축업</p> <p>31) 통신장비, 통신기기 및 부품 도·소매업</p> <p>&lt;삭 제&gt;</p> <p>32) 통신판매업</p> <p>33) 상품권 발행, 유통, 판매, 판매대행업</p> <p>34) 보안시스템 서비스업</p> <p>35)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및 기타 영상물 제작 및 배급업,수입업</p> <p>36) 영화, 비디오물 및 기타 영상물 상영업</p> <p>37) 영화, 방송콘텐츠 및 기타 영상물 공급업</p> <p>38) 영화, 비디오물 및 기타 영상물 관련 서비스업</p> <p>39) 직불전자지급 수단 발행 및 관리업</p> <p>40) 온라인 및 모바일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p> <p>41)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p> <p>42)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p> <p>43) 도메인등록 대행업</p> <p>44) 부가통신 대리점업</p> <p>45)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및 기타 영상물 제작투자, 배급대행업</p> <p>46) 드라마 제작 및 제작 투자업</p> <p>47) 영화상영 및 영화관운영업</p> <p>48) 영화관에 부속하는 각종 위락시설, 음식점, 매점등의 영업</p> <p>49) 문구(펜시)제조 및 출판, 인쇄업</p> <p>50) 캐릭터 개발, 판매 및 중개업</p> <p>51) 음반제작 및 유통업</p> <p>52) 구매대행 및 공동구매업</p> <p>&lt;삭 제&gt;</p> <p>53) 창고 및 물류업</p> <p>&lt;삭 제&gt;</p> <p>&lt;삭 제&gt;</p> <p>54) 상품종합 도매업, 중개업</p> <p>&lt;삭 제&gt;</p>	<p>일부 종료된 사업목적  삭제 및 항목순연</p>
---	---	-----------------------------------

<p>61) 기타상품 중개업  62) 기타통신 판매업  63) 멤버십 포인트 관리 및 이를 이용한 서비스 제공 사업  64) 멤버십 포인트 가맹점, 제휴사 유치업  65) 쿠폰 및 물품 등의 유통, 판매, 판매대행업  66) 위치정보 수집 및 서비스 제공 사업  67) 마케팅대행업  68) 고객센터대행업  6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사업지원 서비스 업  70) 태양광발전 전력생산 판매업  71)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72)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73)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74)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75) 위성 및 기타 방송업  76) 애완동물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77)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  78) 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p>	<p>55) 기타상품 중개업  56) 기타통신 판매업  57) 멤버십 포인트 관리 및 이를 이용한 서비스 제공 사업  58) 멤버십 포인트 가맹점, 제휴사 유치업  59) 쿠폰 및 물품 등의 유통, 판매, 판매대행업  60) 위치정보 수집 및 서비스 제공 사업  61) 마케팅대행업  62) 고객센터대행업  63) 그외 기타 분류안된 사업지원 서비스 업  64) 태양광발전 전력생산 판매업  65)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66)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67)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68)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69) 위성 및 기타 방송업  70) 애완동물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71)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  72) 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p>	
<p><b>제8조(주식 및 주권의 종류)</b>  ①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② 당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팔종으로 한다.</p>	<p><b>제8조(주식의 종류)</b>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lt;삭 제&gt;</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라 제2항 삭제</p>
<p>&lt;신 설&gt;</p>	<p><b>제8조의2(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b>  <u>당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u></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라 신설</p>
<p><b>제11조(명의개서대리인)</b>  ① ~ ② (생략)  ③ 당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u>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한다.</u>  ④ (생략)</p>	<p><b>제11조(명의개서대리인)</b>  ① ~ ② &lt;현행과 동일&gt;  ③ 당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u>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u>,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한다.  ④ &lt;현행과 동일&gt;</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라 개정</p>

<p><b>제12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신고)</b>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제11조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p>	<p><b>제12조 &lt;삭 제&gt;</b></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라 삭제</p>
<p><b>제13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b>          ① ~ ② (생 략)          ③ 당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u>3월</u>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p>	<p><b>제13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b>          ① ~ ② &lt;현행과 동일&gt;          ③ 당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u>3개월</u>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p>	<p>기간에 대한 의미 명확화</p>
<p>&lt;신 설&gt;</p>	<p><b>제15조의2(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b>  <u>당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u></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라 신설</p>
<p><b>제16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b>          제11조, 제12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p>	<p><b>제16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b>          제11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p>	<p>제12조 삭제에 따른 문구 정비</p>
<p><b>제17조 (소집시기)</b>          ① (생 략)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 후 <u>3월</u> 이내에, 임시 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p>	<p><b>제17조 (소집시기)</b>          ① &lt;현행과 동일&gt;.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 후 <u>3개월</u> 이내에, 임시 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p>	<p>기간에 대한 의미 명확화</p>
<p><b>제33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b>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 부사장, <u>전무이사 및 상무이사</u> 등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p>	<p><b>제33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b>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 부사장, <u>전무 및 상무</u>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p>	<p>회사의 직급기준으로 수정</p>
<p><b>제34조 (이사의 직무)</b>          ① (생 략)          ② 부사장, <u>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u>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u>위 순서로</u>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b>제34조 (이사의 직무)</b>          ① &lt;현행과 동일&gt;          ② 부사장, <u>전무, 상무 등은</u>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u>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u>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표준정관 개정 내용 반영</p>

<p><b>제37조 (이사회 구성과 소집)</b>          ① (생략)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5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p>	<p><b>제37조 (이사회 구성과 소집)</b>          ① &lt;현행과 동일&gt;          ② 이사회는 각 <u>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③ <u>이사회를 소집하는 이사는 이사회</u> 회일 5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p>	<p>상법 제390조에 따라 문구 수정 및 소집절차에 관한 규정은 제3항으로 이동</p>
<p><b>제43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b>          ① ~ ② (생략)          ③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u>감사보고서</u>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p>	<p><b>제43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b>          ① ~ ② &lt;현행과 동일&gt;          ③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u>감사보고서를</u>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p>	<p>오기 수정</p>
<p><b>제43조의 2 (외부감사인의 선임)</b>          회사는 <u>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u>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u>사업년도 중에</u>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u>최근 주주명부 폐쇄일의 주주에게</u> 서면이나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p>	<p><b>제43조의 2 (외부감사인의 선임)</b>          회사는 <u>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u>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u>감사가 선정한</u>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u>이후에</u>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u>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u>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p>	<p>외부감사법 개정 내용에 따라 변경</p>
<p>&lt;신 설&gt;</p>	<p>&lt;부칙&gt;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8조의2, 제11조, 제12조, 제15조의2 및 제16조 개정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p>	<p>전자증권법 시행일이 2019년 9월 16일로 예정됨에 따라 정관 규정의 시행 시기를 별도로 규정</p>

□ 이사의 선임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 사내이사 김성욱 선임의 건

제3-2호 : 사외이사 김용대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성욱	1969.09.15	사내이사	계열회사 임원	이사회
김용대	1968.09.03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총 ( 2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 · 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김성욱	(주)다우기술 CFO	성균관대학원 경영학 석사 (주)에넥스 (주)다우재팬 대표이사	해당사항 없음
김용대	서울대학교 대학원 통계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통계학과 석사 Ohio State University 통계학 박사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4호 의안 :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 ·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전 기	당 기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3 ( 1 )	4 ( 1 )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18억원	18억원

□ 감사의 보수 한도 승인

제5호 의안 : 감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가. 감사의 수 ·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전 기	당 기
감사의 수	1	1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1억원	1억원

※ 기타 참고사항

※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